

제43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30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4)
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8)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7)
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1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8)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5)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1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
16.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1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8)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3.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6.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2.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4)
3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5)
3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7)
3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0)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9)
4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0)
4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1)
4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7)
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5)
4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7)
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6)
4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6)
4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7)
4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2)
50. 향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6)
51. 향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0)
5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2.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7)
6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3)
68.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1)
6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0)
7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9)
7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3)
7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7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7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7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7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8)
7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9.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2.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9)
8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4)
8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5)
8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3)
9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6)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7)
9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0)
9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5)
9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6)
9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7.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1. 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1)
1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4)
11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0)
115.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0)
11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0)
1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7)
11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7)
119.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2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2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23.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2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1)
12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2)
1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2)
1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2)
1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6)
1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3)
1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4) 10
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23
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8) 23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7) 23
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24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24
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24
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24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24
1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24

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8)	39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5)	39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39
1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39
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	40
16.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40
1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8)	40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2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23.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26.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2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2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32.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0
○ 의사일정 상정의 건	53
3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53
3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53
3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53
3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4)	63
3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5)	63
3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7)	63

3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0)	63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9)	63
4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0)	63
4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1)	63
4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7)	64
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5)	64
4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7)	64
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6)	64
4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6)	64
4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7)	64
4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2)	64
50. 향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6)	64
51. 향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0)	64
5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5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5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5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5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5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5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5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6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6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62.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6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6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6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6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7)	64
6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3)	64
68.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1)	64
6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0)	64
7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9)	64
7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3)	73
7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73
7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73
7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73
7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73
7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8)	73
7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3
7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3
79.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3
8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4
8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4
82.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4
8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4
8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4
8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4
8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9)	87
8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4)	87
8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5)	87
8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3)	87

9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6)	87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7)	87
9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770)	87
9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105)	87
9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6)	87
9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7
9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7
97.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7
9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7
9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7
10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7
1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7
1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7
10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7
1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7
1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7
10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8
1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8
1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8
10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88
11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8
111. 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8
1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1)	110
1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4)	110
11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0)	110
1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0)	110
11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0)	110
1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7)	110
11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7)	110
119.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10
1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10
12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10
12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10
123.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10
12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1)	115
12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2)	115
1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2)	115
1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2)	115
1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6)	115
1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3)	116
1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6

(14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직무대리로 지정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4)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정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의사진행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그냥 진행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무위원회 소관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에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정의하고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에게 이 법에 따라 의료지원, 양로지원 및 요양지원 등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 새로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법, 5·18유공자법 등 보훈 분야 유사 입법례의 최근 개정 내용이 미처 반영되지 않아서 법률 간의 통일성이 낮아진 법체계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의료지원 의료기관에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안 제16조 이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한 요양지원 대상자의 선정 시에 법적 부양자가 아닌 가구원의—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생활 수준을 조사하도록 변경하는 등 보훈 분야 유사 입법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부처와 협의해서 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보훈부 승격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입법 위임 형식을 총리령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그랬는데 일체 뭐 그런 거 진행을 안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단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말로는 그냥 사퇴한다고 나갔어요. 나가고, 새로운 위원장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단계라면 지금 야당 측에는 간사를 아직도 선임을 안 한 상태에서 법사위를 진행하는 게, 이렇게 비정상이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하게 국민의힘의 간사 선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보훈부장관님,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게 너무 포괄적이다, 좀 불명확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조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적용 대상이 635명입니다. 이제까지 여야에서 거의 합의를 봤는데 합의를 못 본 부분이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그다음에 남민전 사건,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인사가 과연 민주유공자법에 포함이 되느냐는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화보상법에서 인정한 4명 중에 장해등급 14등급 이상이 되는 동의대 사건 관계자 1명하고 남민전 관계 사건 1명, 이 2명만 포함하고 나머지는 제외시켰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사항이고, 단지 그 3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민주화보상법에서 인정한 4명 중에

장해등급만 2명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법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87년 헌정체제를 탄생시킨 여러 가지 민주항쟁에 관계된 분들이 전혀 민주유공자법 범위 안에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 늦은 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번에 꼭 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정무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었고 여야 대표님들, 원내대표님들께 부탁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곽규택 위원** 정의 규정이나 내용상에 특별히 의견 제시할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아까 조배숙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김용민 위원님이 지금 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사퇴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퇴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저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조배숙 위원** 예,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정확하게 좀 하고 싶어서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글쎄요, 그거는 추미애 위원장님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배숙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위원장 사퇴는 본회의에서만 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돼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 그래서 본회의……

그러면 아직 사퇴를 안 했다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법적인 사퇴는 아마 내일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 내일 하겠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시는 거는 법사위원장이 아직, 추미애 위원장이 그냥 지명을 해서 앉아 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 부분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법사위원장이 바뀌게 될 텐데 저희는 그동안 간사도 선임하지 않고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어서 이번에는 좀 간사도 선임하고 정상화를 시켰으면 좋겠

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권오을 장관님,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서해수호의 날이 있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슬로건이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 이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 이랬는데 올해 슬로건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

서해수호의 날 보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장병들이 희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수호의 날의 키워드는 희생된 장병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더욱 북한과 관련해서 안보에 대해서 결의를 다지는 그런 의미여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평화와 번영으로, 우리의 바다 서해’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슬로건 선정 때문에 참전 장병 유가족들이 배제가 됐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이분들을 소외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무슨 평화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슬로건 선정 작업이 과연 장병이나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 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보훈부에서 정확한 슬로건은 앞에 ‘영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게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앞에 영웅에 대한 한 문구를 빠뜨리고 이것만 가지고 언론에 난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했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바다 서해’, ‘영웅’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도 자료 낸 것 보면 ‘영웅’이라는 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현장에서도 보니까 한 구절을 빼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조배숙 위원 빼면 되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자리에서도 유족 중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에 한 문구가 빠졌는데 하여튼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그날 있었던, 대통령께서도 유족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영웅’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

이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배숙 위원 행사 하나를 하려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잠깐만요. 두 분 위원님들이 연속적으로 간사 선임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이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선임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부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일단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사를 새로 선임하는 문제는 아마 곧 또 새로운 법사위원장이 선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다 예상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니 새로운 법사위원장 오시면 그때 다시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직무대리 하고 있는 사람이니 저에게 백날 말씀해 보셔 봤자 제가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마 송석준 위원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위원님의 시간을 벌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광주 5·18 공법 3단체장들하고 얘기를 나누었고 또 지난번 장관님에게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도 대통령께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은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했는데 광주의 5·18 정신적 피해 배상자들은 현재 일부는 신고를 받았고 배상을 받았는데 그게 들쭉날쭉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약 3000여 명의, 그 공소시효를 몰라 가지고 신청하지 못한 분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체 대책을 정부에서 강구하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 점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현장에 내려가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행안부에…… 정신적 피해자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제안돼 있는데 잘 심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장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행안부장관에게도 요구를 하겠습니까라는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제가 행안부장관께도 말씀 전달하고……

○박지원 위원 그분들이 공소시효가 지나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예 회복을 하고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특히 5·18 공법 3단체장들은…… 5·18 기념관이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립적인 기념관이 없고 광주시에서 지하실에 조그만 공간을 뒀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 기념관도 반드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건물이 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5·18 기념관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것을 넣으려고 예산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번 추경은 민생예산, 전쟁 관련 예산만 하도록 하고 정기국회 때 내년 본예산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모두 그러한 독립적 기념관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5·18 공법단체가 지하실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공간도 작고 하니까 장관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이것 역시 제가 자꾸 질문을 했습시다는 저도 독립지사 후손입니다. 그런데 독립지사들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정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아버님은 대구형무소에서 산 기록 같은 것이 당시의 동아일보·조선일보 이런 것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받았는데 시골에 사시는 분들, 특히 완도 같은 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운동에 가담을 해서 많은 희생을 했는데 아직도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록보다는 당시 생존하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전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독립지사가 발굴돼서 국가로부터 명예 회복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확실한 기준을 하나 정한 것은 독립유공은 있지만 뒤에 행정 미상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독립유공자 그것 보고 훈장 서훈을 하고 행정 미상이 나중에 밝혀져서 서훈에 부적합한 인사가 있을 때는 그때 취소하도록 하자, 큰 가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록이 없거나 인우 보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훈부에서 적극 발굴해서 보상토록 큰 가닥은 잡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헌법전문 개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전문에 보면 5·18이 전문에 수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마항쟁도 넣자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일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것은 국민의힘 강령에도 5·18이나 3·15나 부마, 2·28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가 합의된 것이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5·18 또는 부마, 헌법전문에 수록되도록 개헌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보훈부에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최혁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장관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늦게라도 제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산업화를 이뤘던 많은 나라들,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개발도상국에서 먼저 앞서 나갔던 나라들 중에, 그 나라의 명예를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민주주의, 민주화에 실패해서 무너진 나라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성과들을 가지고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민주화의 힘 아닙니까? 그 고도성장의 과실을, 그 권력과 부를 소수가 독점하고 특권층이 독점해서 자기들만의 배를 살찌우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민주투사들께서 싸워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희생을 각별히 기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법안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동학의 상징적인 인물이신 해월 최시형 선생님의 피체지를 샀어요. 피체지를 샀더니 폐허가 돼 가고 있습니다. 앞의 안내판은 부러져 가지고 끈으로 묶어 댔는데 방향도 반대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조병갑 고부군수,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그 탐관오리는 이후에 고등법원 판사가 돼 가지고 해월 최시형 선생님을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천수를 누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반외세·반봉건을 외치고 민초들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돌아가신 지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한 세대가 됐는데도 제대로 모셔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 민주유공자들도 잊혀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국가보훈부가 잘 책임 있게 예우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걱정이 있습니다. PPT 좀 열어 주시면,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께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왜? 결국 보훈공단이 민주유공자도 앞으로 모실 텐데 공단이 비리의 온상이 돼 가지고 제대로 모시겠느냐? 그런데 지금 징계도 아무도 안 되어 있고 구상권도 없고 책임자 처벌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한두 편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돈입니까, 공공기관이 저런 비리를 저지르고.

이걸 보훈부가 계속 방치를 하니까 계속 저희 의원실에 민원이 들어와요. 중앙보훈병원장 인사 비리 건도 들어오고 오늘 또 보훈부에서 특정감사 나갔다고 거기 직원들이 민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갑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부정을 했으면, 비리를 했으면 책임을 지게 하고 환수를 해야 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고요. 이런 일을 안 하니까 보훈부 공무원들하고 공단이 유착 관계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이제 민주유공자까지 국가보훈부와 공단이 보살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단 스스로가 정말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엄중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최시형 선생에 대한 피체지는 바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요양원에 대해서도 오늘 감사실에 바로 연락을 해서, 내용은 알고, 할 수 있는 조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장관님, 지금 이 법이 제정법이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지금 민주유공자의 범위가 일정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관련된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거나 공헌한 자 그리고 유족 또는 가족까지도 예우하도록 돼 있어요. 민주화운동의 개념이 정말 모호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다양한 형태로 민주화운동을 염원하고 같이 참여한 국민들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전 국민이 유공자화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 침묵하던 국민들도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법을 만들어서……

5·18유공자법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특정한 사건, 많은 희생자가 있었고 역사적인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해서 왔지만 이렇게 64년 이후의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유공자화를 하고, 그것도 그냥 희생만이 아니라 기여한, 공헌한 것, 거기다가 또 유족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예우하는, 이렇게 모호한 법을 운용하게 되면 전 국민의 유공자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정말 얼마나……

또 역으로 볼까요. 그러면 민주화운동을 하다 희생된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 당시의 체제에 반대운동을 한 그런 운동도 민주화운동으로 시כת말로 둔갑을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체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그렇게 투쟁하면서…… 또 그 당시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같이 희생했던 많은 경찰관들, 거기에 많은 군인들, 이런 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겁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국가폭력으로 몰아세울 겁니까? 이분들을,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면 그 당시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밤잠 못 이루고 현장을 지켰던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분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면 그러면 그분들은 국가폭력 당사자로 폄하하고 그분들을 어떤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예.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635명이 대상입니다. 대상 중 사망했거나 실종됐거나 장애등급 14등급 이상으로 되는 분 중에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된 내용은 딱 2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락치 사건하고 다른 사건 하나, 2명이 있는데 이분은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장애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이 들어갔고요.

○**송석준 위원** 그렇게 한정되면 좋은데요, 장관님. 그런데……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나머지 부분은 현재 여야 간에 그래도 합의가 된 분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이후에 더 이상 이것 개정을 하거나 범위를 더,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이번 외에 추가로 증원할 의향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우리는 민주유공자법에 포함시키지 않느냐’는 이의 제기가 많은데 당연히 국회에서 여야 간에 계속 합의하에서 늘려 가든지 해야 할 문제지……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번에는 첫 케이스고 앞으로 계속 늘려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이제는 전 국민이 다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정치세력이 이 법에 의해서 이분도 민주화에 기여를 했다,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독립운동의 독립유공자도 지금이라도 구전을 찾아서 독립유공자를 늘려 달라고 말씀하세요, 힘 있는 분들이. 그러면 민주유공자라는 이 모호한 개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공자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힘센 분들이 주변분들을 이렇게 해서 ‘증원해라, 기여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을 유공자화하면 대한민국 일반 국민과 유공자는 어떻게 구분하려고 그러세요? 그 세금 그게 공짜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비유가 될지 모르지마는 3·1운동에, 만세운동에 참여한 국민들이 그때 2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선 인구 2000만의 10%, 200만인데 실제로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전체가 1만 8000명입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민주운동 할 때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 다 포함되느냐 했을 때 3·1 만세운동에 200만이 참여했지마는 독립유공자 전체가 1만 8000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범위를 넓혀 가면서 모든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서훈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아마 그것은 장관님의 희망 사항이실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송석준 위원** 앞으로 힘 있는 정치세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민주유공자는 무수히, 무수히 남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를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장관님, 법의 4조(적용 대상자)에 보면 1호와 2호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의결된 사람’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사망은 그렇고, 상이를 입은 분은 그런 법에 따라서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딱 제한되고 특정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확정된다라는 그 주장은 이 법에 따라서 제한이 충분히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송석준 위원 제한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문제지. 그렇게 임의로 또 해석을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윤상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윤상현 위원 존경하는 장관님, 민주유공자예우법 4조,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보인다,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공헌자라면 공헌이 어떤 기준, 법적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명확해야 앞으로의 논란을 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제기를 하는 거라고 알아주시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분들하고 점심 오찬 하셨지요? 장관님도 같이 가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저는 어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제주 4·3사건을 나치 전범에 준하는 국가폭력 범죄다라고 규정하셨는데 장관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국무위원인 장관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예 확일적으로 규정하신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4·3사건 초기에 9연대장 박진경 대장이 5월 달에 부임을 하고 6월 달에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국가폭력을 한 분인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는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무공훈장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50년 12월 30일,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 이렇게 해서 한 2만 8000명이 받을 때 받았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분은 초창기에 내려가서 선무 작전만 참여하셨고요. 국가폭력을 행사했다는 그 어떤 근거는 없어 보이고요.

제가 알기로 198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CNN 인터뷰, 잘 아시지요? 제주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에 의해서 발단이 됐다, 그러나 그 진압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로 몰려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다, 이게 정통 규정 아닙니까. 그 당시의 정부 공식 문서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토벌대와 무장대의 충돌 속에서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있었다.

제가 4·3사건진상규명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보면 1764명이 공산당 남로당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국가폭력이 아니라 공산주의자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확일적인 이런…… 처음 발단에서 진압까지 6년이 걸리거든요. 그 긴 역사적 맥락에서 판단하실 수 있게끔 장관님께서 대통령님께 말씀 좀 드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장관님,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렇지요?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 역시 이것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전현희 위원 그래서 오늘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민주유공자분들에게 이 법 제정을 해서 빨리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동의합니다.

○전현희 위원 그런데 1987년에 현행 헌법체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희생을 하신 이한열 열사라든지 박종철 열사 그리고 전태일 열사 같은 분들이 현행 대한민국헌법,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동안 피 흘려서 싸워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이 아직도 국가로부터 유공자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분들도 민주유공자로서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들, 이번 법으로 예우가 가능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가능합니다. 현재 이 법이 제정되면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세 분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런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 참전유공자법·고엽제법·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으로 법을 발의했는데 장관님, 그 법의 취지에도 공감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공감합니다.

○전현희 위원 앞으로 통과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전현희 위원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다’ 그러면서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의지·행동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몸 바친 민주유공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이 민주유공자 예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전현희 위원 장관님께서 여기에 공감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신 만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땀 흘려 그리고 피 흘리신 분들을 예우하고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리고 이 법으로 이번에 직접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숨겨진 희생하신 분은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해서 예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장관님,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4·3사건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법안, 특별법이 2021년에 통과될 때도 비슷한 의견을 보여 주셨는데 이 사건을 전부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를 표하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4·3사건에 대해서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역사를 완전히 뒤엎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훈부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결국 거꾸로 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두 번째는 보훈부장관께서는…… 우리 유공자가 참 많아요. 독립유공자도 있고 참전용사를 비롯한 그런 유공자도 계시고 또 민주화 유공자도 계십니다. 이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순위가 있다고 보십니까? 순위가 있다면 어떤 분들을 저희가 가장 우위에 두고 예우해야 될까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제까지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두 부분만 국가유공자로 해서 저희들이 본부에서 이분들을 모셨는데요. 아무래도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가중치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유공자는 아직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중은 없지만 아무래도 독립유공자가 인원은 적어도 현재 여러 가지 법체계상 조금 가중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예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마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선순위에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힘쓰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명확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법을 보면서 아까 말씀은 65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이 법의 4조에 규정되는 것을 보면 결국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는 부마항쟁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심의·결정된 분들을 다 인정하게 되면 이 법의 하위……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보면 실질적으로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렇게 포괄적 위임을 둘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우 부분입니다. 제가 그동안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계속 부탁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는데 예우가 오히려 더 앞서는 것 아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아까 병원 부분이 있는데요 의료지원 부분에 있어서 보훈유공자의 경우에 보훈병원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위탁병원까지 할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다 가능하니까, 보훈유공자의 경우에도?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현재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 추산을 했을 때……

○나경원 위원 아니, 민주화유공자에 의료지원을 이렇게 확대해 주시는데 참전유공자라든지 기타 상이군경이라든지 이런 유공자의 경우에도 똑같은 예우를 해 주시느냐고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현재는 공통으로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지금 그렇게 법 개정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개정이 된 겁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나경원 위원 확실히 개정이 된 겁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마무리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송석준 위원님의 우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은 650명이라고 하시지만 민주화 유공자 법률 또는 부마항쟁 유공자 법률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에는 다 인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법에 따라서 실질적인 위임이 포괄적 위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 확장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 범위는 사망, 실종, 부상자 14등급 이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경원 위원 그것은 밑의 장애등급 부분이고, 그렇지 않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마무리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이 앞에 보면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건데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하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저희가 오늘 처리해야 될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마지막으로 토론하시고 토론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짧게 토론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화운동 과정 중에 국가권력에 의해서 탄압받으면서, 국가폭력에 의해 탄압받으면서 사망하신 분, 부상당하신 분 장애등급이 어느 이상인 분만 해당되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민주화운동 했다고 너도 나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전태일 열사 등 국가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에게 민주화유공자라고 이름을 붙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혜택도 없습니다. 특별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상당한 분들이 병원에 갈 수 있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하지 못했고, ‘너도 유공자 되려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누군가 계속 해코지하는 겁니다. 그것 아닙니다. 오늘 단단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생운동 하다가 치안본부에도 끌려가고 다 했지만 제가 이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서영교 위원 저희들은 이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망하시거나 부상을 당해서 장해등급이 14등급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처우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그 엄마가 내 아들이 떠났는데 내 아들이 민주화유공자라고 하는 말을 나라가 정해 주는 것을 듣지 못하고 이한열 열사 어머니는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오래 걸렸는데 이제 정하고 정리하자는 취지다라고 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오해를 또 만들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늦었는데 이제라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오해 없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년 이후 62년 만에 이 법이 통과됐고 이 법이 2000년에 처음 발의됐고 그 이후로 26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권오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고맙습니다.

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8)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7)

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1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14시5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송석준 위원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장관님?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던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는 법이에요.

○서영교 위원 물 흐리지 말아요. 제가 감방 갔다 와도 대상자가 아니야.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한 법을 만드시면 안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송석준 위원님,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심각한 법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던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법이에요.

○서영교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송석준 위원 정말 이게 얼마나 큰 폐해를 갖고 있지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9개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와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간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공인제도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55조의5제2항에서 인용하는 동조 제1항제6호의 공인 취소사유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행정입법 위임 조항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침익적 행정작용의 법제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명시된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의 취소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법 시행령의 공인 취소사유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도록 재공인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함으로써 공인제도 결격사유 개정 규정이 장래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 중 관세사 수 기준을 현행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되 이와 연동하여 분사무소 설치 요건은 현행과 같이 관세사 5명 이상의 관세법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는 개정법률 시행 이후 관세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 시행 전후로 완화된 관세법인 설립 요건을 다르게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유사 업무 영역에서 법인 설립 기준을 완화하였을 때도 적용례를 둔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안 부칙 제2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회계 설치 시 그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열거하도록 강제하는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별표1 제25호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 별표1 제25호도 함께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정문의 내용이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각각의 관계를 명확히 법조문을 정리하였고 개정안에 누락된 공포 후 시행 예정 법률의 개정 부분에 대한 시행일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현행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연령기준 적용례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과세기간분으로 명확히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경부장관 소속 국가통계위원회를 국가데이터처 조직개편에 맞게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위촉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경과조치 조문을 두고 있는데 위원의 자격, 임기 등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를 개정안처럼 법률에 명시할 내용에 해당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안 부칙 제2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의 임원 등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 등을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고 주류 등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용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한 검정 제도를 주류 등 제조자의 제조·저장용 용기에 대한 신고 제도로 규제대상 및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8조제1항제3호는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용기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법문상 미신고 주류 등의 용기를 사용한 판매업자도 처벌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점, 개정안에 따른 제조·저장용 용기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의 수리는 신고의 효력 요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서 과태료 구성요건을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저장용 용기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5항, 제9항은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홍근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처음 법사위에 출석하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대전환기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대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을 통해서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든든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구윤철 부총리, 전쟁 추경 25조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됐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내일 국무회의를……

○박지원 위원 내일 국무회의에 하고 시정연설 있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지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추경을 대정부질문 하고 하자…… 시급하니까 추경 아니에요? 그것도 전쟁 추경 아니에요? 지금 후티까지, 홍해까지 문제가 되면 세계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오라는 곳도 없고 초청받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헤매고 다닌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는 국민과 기업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죽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피해를 받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문제도 무기질비료 같은 것 반영됐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또 면세유 같은 것도 반영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농기자재가 상승하면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해서 국민 식탁도 위협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예산처장관 잘 생각하세요. 정치는 협치가 좋습니다. 그러나 협치가 안 되면 책임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에서 전쟁 추경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면 부총리도 그러시고 담당 장관인 기획예산처장관도 단독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국민도 서민도 기업도 다 죽어요. 나라가 죽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박지원 위원님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던 국면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서 매우 지금 위기 상황,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또 국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아가서는 피해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박지원 위원 우리가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전쟁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당의 도움이 없으면 책임정치를 위해서 단독 처리하자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시급한 추경을 통해서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에 함께 머리를 맞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야당도 이런 추경의 필요성이나 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협조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데이터센터장? 데이터처장이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처장입니다.

○박지원 위원 옛날 통계청장 그대로 부르지, 이름이 복잡해졌어.

지금 농어촌에 가면요 외국 노동자가 10% 이상입니다. 15%까지 돼요. 해남은 6만 2000 인구인데 거의 1만 5000명이 외국인들이예요. 이게 생활인구란 말이에요. 이 생활인구를 편입시켜서 예산 배정이나 정책을 세워야 인구소멸, 지방소멸 안 되니까 그 정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지금 행안부랑 협의해서요 저희가 생활인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에 그 외국인들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존경하는 부총리님, 최근 발언을 보니까 배럴당 120달러, 130달러 되면 위기 3단계다, 민간에서 차량 5부제 한다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그게……

○윤상현 위원 이게 위기 판단 기준은 뭘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유가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라든지 국민 생활에 충격이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인 경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부제 등을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비도 좀 줄여 주고 공급……

○윤상현 위원 환율은 그러면 달러당 1500원 하는데 이것은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윤상현 위원 심각하게 보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보고 있고요. 다만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외환이 들어오도록 하는 외환 관련 3법, 조세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4월 1일부터 또 저희들이 국채가 선진 국채지수에 편입됩니다.

○**윤상현 위원** 선진 국채, WGBI?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WGBI라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환율이, 예전에 작년 2월 달인가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 1470원으로 폭등을 하니깐 국민 재산 7%가 날아갔다…… 이렇게 치면 국민 재산 10%가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고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에 대한 영향 그리고 성장률, 우리가 지금 1.7%로 또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위기가 되면 까딱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강한 우려를 갖고 있어요.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그런 위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 추정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추정…… 옆에 계시는 박홍근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전쟁 추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추정의 목적이 고유가 대응, 에너지 수급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정을 보면 배란다 태양광, 예를 들어 전세사기, 청년일자리 물론 항상 필요한 곳이지요.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25조 원 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 문제, 고유가, 25조 중에 몇 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 기타 다른 필요한 예산도 확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선거용 추정 같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장관님, 말씀 있으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윤 위원님, 그런 일각에서의 우려가 있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다시피 지금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너무나 심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급박성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사업 중에 당연히 추정은 국가재정법상 그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관된 사업으로만 저희가 선별해서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하겠고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구윤철 장관님, 일단 지금 우리가 유가가 너무 오르고 있고 중동 정세 때문에 수입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은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감사합니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렴한 주유소에 시민들이 좀 몰려가 가지고 몇십 분씩 대기를 하는 이런 상황도 지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프타 같은 석유화학제품 공급 불안정 때문에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재기 문제가 잠깐 불거지기도 했거든요. 지금 국가는 국민을 안심시켜

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추경도 있지만 정책들을 좀 더 재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되고요. 또 이게 전반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수입물가 안정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을 국내적으로 또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게 추경에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국내에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게 피해 기업, 피해받은 물류업체, 중소기업들, 수출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또 피해를 받는 서민들 이런 분들을 완화를 시켜 주지 않으면요 그게 바로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목적이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목적도 충분히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빨리 돼야 됩니다. 이게 늦으면 늦어질수록 이분들의 충격이 너무 커집니다.

○박은정 위원 국회도 바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홍근 장관님, 장관 취임 축하드립니다.

지금 구윤철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선 다변화, 석유화학제품 중심의 산업원료 가격보전, 물가안정 이게 추경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화폐 예산도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서민경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된 정부지출의 주요 내용이나 추경 재원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께서 좀 더 답변하실 수 있는 게, 국민들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시다시피 내일 국무회의에서 저희가 의결을 하고 나면 공식적으로 전체의 총량이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또 세부 설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알다시피 엠바고가 걸려 있는 상태이고요. 내일 국무회의 이후에 공식 보도가 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또는 청와대 등을 통해서 알려진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규모는 25조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도체 호황이라든가 또 증권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 없이 이번 추경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히 내국세 등 법에 따라서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은 지방으로 또 이전하게 됩니다. 그건 법률적 규정 사항이고요. 나머지 규모를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큰 세 가지 분야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지금 전쟁 추경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 추경 이야기를 하신 게 전쟁 나기 전인 2월 중순쯤에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때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 하시지는 않았고요. 관광산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 등을 놓고 추경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전제하에 말씀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추경 언급을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벌써 2월 중순부터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전쟁 추경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이

라는 단어가 나온 때부터 되짚어 보면 결국 이것 선거용 추경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박홍근 장관님께 축하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바로 질문을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박홍근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초과세수, 그러니까 국채 발행 없이 발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초과세수라 그랬는데 그 초과세수가 확정된 건 아니지요? 그래서……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절차적으로 보면 저희가 3월 말을 거쳐야 합니다마는 이미, 추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초과세수가 건힐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세계잉여금은 별도로 회계연도를 관리해서……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건 법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을 어디에 쓰도록 다 정해져 있고요. 이걸 말 그대로 초과세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3월의 전체 세입 상황을 봐 가면서 편성한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3월 말에 여러 가지 주총이나 이런 것 보면서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걷은 돈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이게 지금 국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이 아니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이 돈 잘못 풀어서 물가만 오를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에너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필요한 데 돈을 제대로 써라. 내일 발표되는 것을 봐야 알겠지만 오히려 돈 푸는 것으로 인해서, 선심성 추경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만 유발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추경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일까지라도 다시금 살펴보시고요.

지금 흘러나오는 것만 봐도 ‘이것 너무 과도하게 지역에 가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비판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화폐를 꼭 써야 되는 것이야?’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필요하게 추경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나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수추계는 저희가 그냥 없는 숫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실제 재정부 세제실에서 그동안 저희가 보완된 모델을 통해서 실제 얼마가 건힐 것이라 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이 어떤 선거를 염두에 두고 편성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 정부에 또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신뢰도나 지지도를 봤을 때 이것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전쟁의 상황이, 한창 그래도 성장률이 그나마 올라가던 게 OECD가 며칠 전에 2.1에서 1.7까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계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매우 큼니다, 우리 상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더 선제적으로 방파제를 쌓느냐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도 보조금 등을 통해서 이 상황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추경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한 거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 지지율 좋으니까 선심성 추경 할 필요 없다 말씀하시지만 너무 자만하시지 말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신동욱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신동욱 위원** 박홍근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구윤철 장관님께 먼저 좀 여쭙볼게요.

지금 우리가 말로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돌입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유가가 계속 이렇게 전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또 다양한 정책을 써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신동욱 위원**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상승세를 꺾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국내외적인 요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도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OECD 발표 보면 경제성장률도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그러면 물가 오르고 성장 정체되면 그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보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 현재까지는 수출이나 소비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상황에 따서는 이게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신동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추경 말씀을 저희가 자꾸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25조 원을 이런 상태에서 풀면, 지금 물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나하나를 두고 보면 국민들이 보면 다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 유가 상한제라든지 또는 추경을 통해서 기름값을 경감을 시켜 준다라든지 또는 소비가 어려운 분들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게 뭔가 돈을 좀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 전쟁이기 때문에 어렵고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거시경제를 담당하시는 경제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쟁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으로 도와드려야 된다, 이 논리는 제가 보기에 정말 비경제학적 논리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기름값 상한제 같은 것도 시민들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결국은 지금 유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게 수십 년 동안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기름값을 낮춰 주는 게 결국 전부 국민 세금에서 그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차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고. 그래서 시장가격에 맡겨 두는 것인데 이걸 시민들의, 소위 포퓰리즘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접근을 하시면, 추경을 해서 무슨 이 위기를 떨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잘못하면…… 저희도 반대하기 어려워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야당 협조해라, 협조해라라고 하시는데 야당 협조해 가지고 돈 자꾸 풀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대학교 1학년 경제학원론에만 보더라도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의문이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경제관료들이 이 부분을 자꾸, 모든 것의 최종적인 해결책이 추경이고 돈 푸는 것이고 어려운 분들 단지 아무 철학 없이 도와드리는 거라고만 그냥 순종하시는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철학 없이 도와주는 건 아니고요. 최고가격제는 이런 개념입니다. 전쟁이 나고서 바로 거의 한 2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전쟁 이전에 들어온 거예요. 전쟁 이전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낮은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유가는 정세에 따라서 2000원까지 가 버렸어요. 그러면 정부가 놔둘 겁니까?

그래서 종전의 방식대로 유류세를 인하해 주려고 하면 정유사 가격만 낮아집니다. 시장가격이 2000원이예요. 그러면 정부가 정유사 가격을 낮추면 정유사 이익만 주고 시장은 가격이 높아지니까 국민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이래서……

○신동욱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들어왔던 것이 소진되고 나면 최고 이거는 포기하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기존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700원대로 낮게 저희들이 정유사가 출고하도록 했고요. 또 지금은 이번에 2차 할 때는 1900원대로 높였거든요. 이게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철학 없이 순종이라는 표현을 쓴 표현은 좀 듣기가 힘들었다면 죄송스러운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욱 위원 경제정책을 보면 대통령 SNS로 거시경제가 운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대통령 이거 하라고 하면 그냥 거기 따라가고 그게 포퓰리즘적으로 해석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 국면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우리 경제관료들이?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위험, 스태그플레이션 초기에 이미 진입했고 위험한데 추경, 추경으로만 해 가지고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눈속임하면 정말 나중에 큰일 날까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률은요, 민간인 돈이 정부로 세입이 더 들어온 겁니다. 한데 지금은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떨어지는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가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현재 유가 부분에 대해서 압력은 좀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이 추경 25조 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박홍근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잘해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 이혜훈 후보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여야 합의로 채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송석준 위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는데 발표 곧 한다고는 하지만 이 추경이 굉장히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잘못하면 부작용도 있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쓸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은 전쟁 추경 맞지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그 추경이 단순히 돈 풀기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꼭 써야 될 데 제때 제대로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러지 않아도, 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이미 물류업계가 심각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아는 잘 나가는 물류업체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소비도 침체돼 있고 생산·제조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선순환의, 뭔가 순환을 하는 추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 한 톨을 쓰더라도 지역경제, 뒷골목에 또 경제 구석구석에 온기가 퍼지도록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송석준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이 화물·물류 업체잖아요. 이런 데, 가장 취약한 교통·화물·물류 업체에 지원이 가야 될 것이고 또 유류가 인상으로 인한 직접 취약계층들 지원이 가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원이 이렇게 휘발성 지출보다는 이제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게, 승수효과가 높게 운용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니까? SOC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물류 쪽도 SOC로 분류되는 예산이 있겠지만 특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방에 가면, SOC 투자를 안 해 주면 지방경제가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SOC 쪽에 뭔가 집중 이렇게 돼야 앞으로 동네 골목의 음식점서부터 또 자재 그리고 전후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승수효과가 나오잖아요,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민간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건의도 들으셨을 텐데 장관님, 이번 추경 상세한 내용을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중동 상황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그런 계층, 업종이나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분명하고요. 그것을 곳곳에 세부적인 사업으로 반영을 했다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운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OC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SOC 예산을 최근 가장 많이 상승 또는 편성 금액으로도, 총량으로도 많이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그래도 아직 부족한 거예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SOC도 알다시피 이제는 과거의 그런 도로보다는 철도 등에 대한 요구가 좀 더 커져 있는 상태에 있지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 예산에 그렇게 SOC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노후화된 SOC 있잖아요. 철도, 도로 이런 수준을 넘어서 기존의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교량 이런 안전 시설물들의 노후도가 높아진, 시설의 교체·보완 이게 굉장히 시급하면서 그게 굉장히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집중 투자가 좀 이루어지도록, 내년 예산편성에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축하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서영교 위원** 중랑구에서 경사가 났어요.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청문회도 잘 통과되셔서 너무 좋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제가 일요일이었습니다. 날이 하도 좋아서 시장을 도는데 신발 가게에 신발이 확 줄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발이 배로 들어와야 되는데 배로 들어오기가 어렵답니다. 실제로 신발이 없고 그리고 그게 물건이 오면 값이 높답니다, 높아서 가지고 와서 팔기도 부담스럽고. 그걸 들으면서 바로 여기에 이 현상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가장 직격탄은 어려울수록 서민들에게 먼저 오잖아요, 그리고 농민들에게 오고. 지금 고유가, 비료 값 이런 자재 값들이 큰 문제가 있으니 OECD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시에 빨리 풀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4% 낮았습니다, OECD가 2.1에서.

○서영교 위원 0.4% 낮추고 있고, 윤석열 때는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였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1~2% 또는 1%대 이렇게……

○서영교 위원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0%대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넘겨줄 때가 4.6%였거든요. 윤석열 정부 오면서 마이너스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끌어올려 놓고 있는, 그나마 코스피, 주식 이 역할을 하고 제때 움직이는 대통령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말씀처럼 모두 다 추경이 중요하다, 지금 어려운 곳에 지원해야 그게 경제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힘에서 대정부질문 이후에 하자는 등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서 자꾸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 이야기하셔서 그런 일 없게,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질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지 않아도 원래 3시에 송언석 원내대표를 뵈기로 했는데 지금 법사위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인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서영교 위원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을 주게 하고.

제가 좀 요청하고 싶은 건 기획예산처장관님, 국민이 준 세금을 어떻게 국민에게 골고루 잘 돌려주느냐 이게 정치잖아요. 이자 붙여 돌려줘야 되잖아요. 장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쉬었던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쉬었던 청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쉬고 있는 장년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추경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풀어 나갈 수 있게, 그런 곳에 펀셋으로 잘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되다가, 지표로 보면 청년들이 매우 안 좋은 상태고 그중에서도 쉬었음 청년이 한 사십팔구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는 이런 일경험 지원 사업이라든가 특히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많이 보장하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박홍근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고맙습니다.

○조배숙 위원 구윤철 총리님, 추경을 얘기하는데 전쟁 추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름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상태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이란이 전쟁 중이니까, 그 정도로 시급하다는 아주 위기 또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래도 이 정부가 평화, 평화만을 얘기하고 영웅도 빼고 그러는데 왜 전쟁이라는 말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하는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여러 번 했거든요. 지난번 코로나 때도 추경을 했지요. 그리고 작년에도 취임 직후에 또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는 추경의 효과나 이런 것이 분석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좀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추경의 효과 하면 당장은 피해를 받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지원 효과는 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목표하는 것 중의 하나는 경기부양 효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사실은 이번에는 경기부양보다……

○조배숙 위원 이번에는 아니지요. 그런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추경을 하는 목표는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도 경기 지원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줘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까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 위기가 고유가 그리고 반도체 쇼크 이런 걸로 왔단 말이지요. 최근에 구글에서 터보퀀트, 우리가 들어도 아주 생소한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환율이 올라 가지고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물가도 오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를 보니까 지역화폐 그리고 또 비수도권 우대 원칙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유가와 반도체 쇼크로 생긴 위기인데 이것을 지금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또 비수도권 우대 원칙이라 하는 게 저는 과연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주가는 오르지만 실물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전쟁으로 돼 버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상황분석을 좀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전쟁으로 인한 것, 그렇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이 두 개를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이번 추경은 아무래도 이란 전쟁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 대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하는 그게 이번 추경의 목적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도권에 있는 국민보다는 지역에 있는, 또 지역 중에서도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 조금 더 가야지만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도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한 두 번째 효과를 거두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국민들한테 그냥 현금으로 주면 그 지역에서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써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화폐를 줘서 그 지역에 이렇게 좀 떨어지고, 왜냐하면 지역에 지방에 많이 주는데 그 지역에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서울 와서 써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배숙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도 동의해요, 지역이 어렵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는 것보다도,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 부동산 문제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그래서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방에서는 그걸 못 하게 하니까 분양도 안 되고, 그런 게 굉장히…… 그래서 저는 좀 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이 가야지 그냥 어렵다 해서 그때그때마다 목마르니까 물 떠주는 식으로—샘물을 파 주는 게 아니라—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균형발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은 또 따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구가 소멸한 지역에 주택을 하나 가지는 경우는 2주택에서 빼 줍니다. 그런 정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박홍근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박홍근 장관님께서 취임 초에 100조 민간투자자 성장엔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방향성은 굉장히 잘 잡았다 생각합니다. 재정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SOC나 이런 필요한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부분을 민간이 메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상 교통 SOC가 대부분 멈춰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지금 예를 들면 위례신사선 같은 지하철의 경우에 SOC 건설이 멈춰 가지고 민간투자자를 진행하다가 민간투자회사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게, 왜 민간 회사들이 계속 서울의 교통 SOC 사업을 포기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아시나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기본적으로 사업성·수익성의 문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현희 위원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이런 걸로 건설물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처음에, 애초에 계약 당시에 제시했던 그 건설 단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비의 문제로 대부분의 민자 회사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민간투자 SOC가 교통 분야에서 특히 대부분 멈춰 있는데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지난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재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더구나 주무 부처인 서울시의 입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현희 위원 일단은 장관님 진단과 처방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예타의 경우에 서울의 경우에는 도심이라는 그런 특징상 교통 대책이 마련이 되고 지하철이 건설되면 처음에는 경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차츰 경제성이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이 생략되는, 면제가 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입법 조치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 민자의 사업비를 높이기 위해서 민자의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물가가 적용이 됩니다.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건설물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민자사업에도 건설물가가 적용되도록 하면 사업비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민자 회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설물가를 일반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을 시킨다면 서울의 SOC 사업이 더욱더 앞당겨질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입법을 제가 발의했는데요 장관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민자사업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의 장점은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그 민간자본으로 시행된 사업의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국민들, 시민들의 어떤 이용에 있어서의 부담이 더 증가하는 측면들이 같이 연동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의원님께서 내주신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최혁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토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혁진 위원 박홍근 장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추경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25조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지금 충격을 계속 입었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내란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중동전쟁까지 해서 체력을 회복할 만하면 계속 이런 악재들이 오게 되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기초체력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찢끔찢끔한 추경으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을 적극적으로 챙기시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추경 플러스해서 예를 들면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가 나서 가지고 그나마 좀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도 사회 공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인을 하고 공공부문도 사회적책임 활동들을 좀 넓혀서 민간의 어려움들을 좀 챙기는 전방위적인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두 집 걸러 한 집이 망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한 두

세 집 망하고 한 집 살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닥 경제가 상당히 많이 위기에, 벼랑 끝에 몰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은 더욱 심한 상황이고 또 소상공인들도 지난 십여 년 사이에 많이 고령화가 돼서 지금 추경이 되더라도 이분들이 견디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겠는가라는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견이 있을지라도 저는 강력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관련해서 선거용이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로부터 있었는데요. 그건 경제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마르티아 센 같은 경제학자도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재난대응이나 위기대응에 강력한 힘을 보여 준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잘 발달해서 국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계속 심판을 받기 때문에 민생을 더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정부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와 떼려야 뗄 수도 없는 건데 저는 무슨 선거용이다라고 하는 비판 자체가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과연 25조 추경으로 만족하겠느냐? 부족함이 있겠으나 그래도 그나마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또 힘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추경이 선거용이다 이런 것들은 경제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학적으로는 아주 궤변입니다. 그런 비판 자체는 일체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강력한 추진을 통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임팩트를 만들어 주십사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6항부터 8항까지 및 1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윤철 장관님, 박홍근 장관님, 안형준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8)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5)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1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1)

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
16.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1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8)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3.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6.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2.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5시3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32항까지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준비되는 사이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처리할 안건이 13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질의가 많으시겠지만 시간 안배하셔서 질의시간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제는 질의하지 말고 가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셨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이세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32항까지 2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사업에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를 명시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번역사업 수행자가 관련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정보 통합관리 사무는 현행법 제1조의 고전문헌 수집·정리 및 번역 기능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규정의 입법 실익이 낮다는 점, 현재도 DB 구축 정보화 사업과 협동번역 네트워크 구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정 약사법 시행에 맞추어 의학·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5(학생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학교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자료를 교육 관련 지표 등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수집은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 성별, 주소, 학교명, 학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법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 근무의 결격기간 등의 상한을 규정하며 그 한도에서 교육부령으로 세부적인 결격기간을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 제16조 및 제48조에서는 세부적인 결격기간을 교육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결격기간을 달리 정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세부적인 결격기간을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을 고려하여 ‘범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같이 법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는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유보통합과 관련한 교원·교육과정 및 각 기관의 기능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기 전에 특정한 기관의 기능을 선행적으로 확장하는 입법은 향후 기관 간 제도의 중복 및 충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는데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로 수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부장관이 연구부정행위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등에 관한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술성과를 사업수행기관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학술성과의 유형이나 연구자 참여율 등에 따라 사업수행기관 외의 연구자 등이 학술성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학술성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제2항은 사업수행기관 이외에 연구자 등이 학술성과를 소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학술성과의 유형 등을 제시하면서 학술성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로 명칭할 뿐이어서 학술성과의 유형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논문,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와 같이 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 제16조에서 이미 대학 등이나 연구자의 연구활동 성과를 학술성과로 명칭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학술성과와 개정안의 학술지원사업을 통한 성과 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6조의2의 학술성과를 학술지원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제19항, 제22항, 제23항, 제25항, 제26항 및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7항, 제20항 및 제21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고진 교육부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교육부장관님께 좀 여쭙보겠습니다.

의사일정 22번이고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집회·시위의 제한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아마 상임위 통과된 것 같은데요. 현행법에서 이 개정안 말고도 학교 주변 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

○곽규택 위원 잘 모르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 주변에서, 학교 근처에서 교육활동에 저해가 되는 집회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사전에 알기가 어렵고 늘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만 알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집회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그 신호를 받은 경찰로부터 학교에 알려서 사전에 교육활동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경찰이 학교에 통보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학교 주변의 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이번에 이 법 개정해 가지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규정 자체가 조금 모호하다 이렇게 경찰청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이런 것을 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헌법상에는 보장하면서 하위법에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집회·시위를 제한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법에서도 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렇지요. 교육위원회에서도 그것 관련한 토론이 진행이 됐었고요. 교육부의 입장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저희도 같이 동의하고, 다만 그 집회가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줄 경우에 그걸 자제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진행되고 그런 의견을 다시 경찰청에 물어봤을 때 경찰청에서도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규택 위원** 학교장이 경찰서장한테 제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학교장의 요청하고 집회·시위를 하는 쪽하고 의견이 충돌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제한시켰다가는 또 집회·시위하는 쪽으로부터 경찰서장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 규정은 내용이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 이렇게만 규정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일정한 시간대를 규정하든지 인원을 규정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계속 분란의 소지만 일으키는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실제로 토론회에서도 진행됐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상황을 저희들이 보면 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일들이 사전에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져 가지고 학교가 당황하기도 하고 학부모님들 당황하고 이런 경우들이 더러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제로 집회신고가 있을 때 그걸 사실은 학교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신고가 있으면 그걸 학교에 알려 줄 때 교장 선생님께서 혹은 학교 공동체에서 찾아가서 집회하시는 분들께 적어도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에 확성기를 크게 쓰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집회를 주관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그런 일들을 막자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집회·시위 전체를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장관님, 집회·시위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신고제여서.....

○**곽규택 위원** 그렇게 신고제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학교장이 금지해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래서 신고제이기 때문에 더욱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함께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입법을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마무리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장관님, 장관님께서 교육부장관이 되시고 어쨌든 교육개혁에 정말 큰 전기가 마련될 거다라고 하는 시민사회의 기대가 크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변화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더 좋은 경제적 성장의 발판을 통해서 정말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 몇 가지 중의 하나가 기후 위기가 있고요, 하나는 만연화되어 있는 급속한 성장에서의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이것을 공고히 하는 기득권과 특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대 의대를 포함해서 서울대 자연계열 지원을 하려면 입시에서 미적분을 의무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진학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지방 도시에 사는 아이들인데요, 지방의 중소도시에는 미적분Ⅱ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진학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강을 통해서 듣는 건데 인강을 통해 가지고는 서울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말에 대치동 학원가에 가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길에다 시간 보낼 바에는 차라리 다른 대학 진학 준비를 하는 게 낫지, 그러다가 이도 저도 안 될 수가 있다.

장관님, 만약에요 특정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울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에서는 배울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게 입시에 필수과목이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서울대학교 재정지원을 24년도에 보니까 타 국립대학에 비해서 5배나 받고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장벽을 만들어 놓고 특정 아이들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공정이라고 포장하고…… 제가 법사위에 와서 보니까, 사법 불평등도 보니까 대법원·헌법재판소 거의 100%가 서울법대 출신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로스쿨 진학생의 대다수가 점점 강남 3구 출신에, 특목고 출신들로 바뀌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대한민국이 어느 날 바뀌어 가지고 지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는 겁니까? 그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특권이 되고 기득권이 되고 불평등을 고착화합니까?

교육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만약에 지방에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으면 재정을 투입해서 다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 과목을 의무로 하지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국고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100% 사립대학으로 가든가. 그래 놓고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명들게 해 놓고 마치 무능해서 그 자리에 못 가는 것처럼 돼 있는 교육 환경을 언제까지 두실 거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장관님이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한말씀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상당히 아프게 듣고 있고 실제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육에서 생기는, 교육 때문에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상황 자체는,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국민주권정부 시대 때에 준비를 해서 국민적인 숙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서 꼭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그 전에 먼저 예를 들어 주신 특정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을 배울 수가 없다. 사실 단위학교로 보면 실제로 미적분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하면서 실제로 단위학교에는 없지만 그걸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동 교육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 과목이 필요한 몇몇 다른 학교들의 학생들이 모여서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로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학지도 선생님, 현재 공립학교 교사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공정한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이게 현실이니까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최혁진 위원** 장관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관련해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좀 추가질의드립니다.

사실 지역 교육이 무너진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에 소위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 자사고라든지 지역에도 이런 좋은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의욕을 완전히 꺾어 버려서 지나친 평등주의 때문에…… 지방에 좋은 곳 많았습니다. 이성운 위원이 계시는 전주에도 정말 훌륭한 자사고 있었고요. 이런 곳들이 지금 거의 다 사실은 해체가 되면서 강남 3구로의 집중 현상이 굉장히 강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로스쿨에 서울 SKY 대학 출신들이 절반 이상이다, 참 저도 답답하다고 생각합

니다. 저도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로스쿨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관님이 나오신 김에…… 느끼는 문제하고 해법이 전혀 달라요. 그 길로 지역도 살리고 또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 평등권도 보장하면서 또 수월성 교육도 하게 하는 이런 교육정책이 실제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거의 과잉 평등주의로 인해 가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경제적 격차에 따라서 아이들의 진로가 결정되는, 그래서 강남 3구로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부동산 폭등과 같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바꾸게……

제가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 발언에 토를 다는 게 아니라 그 이념과 현실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시려고 그러니까? 강제로 교사를 지역에 내려보낼 수 있나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당장 두 분 위원님께서도 정말 진심으로 대한민국 교육 현상을 걱정하시면서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르게 진단하시고 또 당연히 이것에 대한 해결에 관해서도 아마 조금씩 다른 견해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이만큼 대한민국 교육에 관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말 이견 이념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백 명이면 백 가지의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신동욱 위원 장관님, 이념의 문제 아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 자율성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인재를 키운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지금 유럽의 그 좋은 학교들, 그 좋은 대학들이 미국에 밀려서 저렇게 경쟁력이 사라진 것들이 다 교육 평등주의, 소위 그냥 똑같이 교육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데가 프랑스 아닙니까? 파리 1대학·2대학·3대학·4대학 다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100개 만들자는 이재명 정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나라의 고등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한번 정말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어쨌든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로 올바른 진단부터 해결 방안에 관련해서까지 그리고 해결 방안 관련해서도 초중등의 단계, 성장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진단 처방과 또 대학생들, 고등교육의 대상 학생들에 대한 것들은 서로 해결 방안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를 망라해서 놓고 특히 국가의 10년 단위 교육개혁 계획을 세울 국가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좋은 방향의 안을 1안·2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민적인 숙의 과정을 통한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서 적어도 우리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장관님께서 교육 문제에 대해 정말 열의가 많으시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법안 처리할 게 오늘 너무 많아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시간을 가능한 한 지켜 주시고 장관님도 마이크가 꺼진 뒤에는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부탁드립니다.

조배숙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아까 광규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22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대안)이요. 제가 법안을 보니까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찰서장이 ‘이러이러한 집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통고를 하면 학교장이 봐 가지고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등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판단을 학교장이 할 수 있나요, 이런 사항을? 정보가 있나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에서도 의견이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한테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현행법상 학교 주변 집회의 제한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여기까지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은 과잉 입법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9조의2 1·2·3호가 있는데 1호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또 법이 있다는 말이지요. 법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교육감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를 제가 보니까 후보들이 과연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공약인지 아니면 무슨 복지행정가인지 너무나 현금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청소년펀드 1400억 원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교육기본소득을 주겠다…… 교육의 본질적인 질적 향상이나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고민보다도 그냥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교육감후보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43%에 달합니다. 같은 전북도지사의 경우에 부동산이 25%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교육감선거 제도도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정당 추천으로 해서 러닝메이트제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첫 번째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경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고서에 집회명,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을 추방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집회명에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주관 단체와 집회의 개최 목적에 실제로 교장선생님이 비교육적인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확성기 사용 같은 시위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업할 때 확성기를 지금 이쪽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겠다 싶을 때 그런 경우 학습권 침해에 관해서 최소한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조배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다음에 교육감선거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교육감선거 자체도, 적어도 그 선거 과정 자체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따라서 교육감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은 공약 하나하나부터 선거운동 과정 하나하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아무튼 1호는 삭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이성운 위원님.

○**이성운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운입니다.

장관님, 제가 20일 전 3월 10일 날인가요, 전주 미산초 문제를 말씀드렸고 장관님께 여쭙었는데 장관님께서 그 당시에는 파악을 잘 못 하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혹시 장관님, 그 후에 상황을 좀 알아보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상황은 알아보았고요. 다만 그날 위원님께서 저에게 꾸지람을 치시면서 장관이 갔다 왔으면 어떻게든지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많은 부분, 거기의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교육부에서 권장할 수 있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온전히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운 위원** 그러면 미산초 문제가 교육부가 아니라 전북교육청이나 전주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장관님 오셨다 가시고 그 후에 미산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많이 알아봤는데 결국 지금 전주교육청에다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학생도 학교도 교육 담당자 선생님도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이성운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운 위원** 장관님,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학생이 6명이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이성윤 위원** 6명인데 지금 담당자가 네 분이고 교육청에서 외부 전문가 두 분 보내고 그래 놓고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부모가 온라인 수업을 요구한답니다. 하고 싶어도 진단서라든가 이걸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학생은 그에 해당이 안 돼서,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요. 법적인 측면이 필요하면 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전국적인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면 기준도 만들어 주시고 해야 되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20일 전에도 여쭙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면 장관님이 거기 가셨다 오신 효과가 없잖아요.

장관님, 미산초에 관심 가지고요. 거기에 지금 해결 안 된 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안 되고 또 뭐랄까, 특별허가가 있어야 온라인 수업이 된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 좀 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학교정책실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북교육청과 함께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전주교육청에다 맡겨 놓지 마시고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교육부 차원에서…… 이것 전주의 일이지만 대한민국에 이런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윤 위원**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회의를 시작한 지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32항까지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까 토론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항 및 2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배숙 위원 하나는 이의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부분은 좀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22항 말씀하신 거지요?

○조배숙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지금은 22항 아니라서.

○조배숙 위원 그래요? 몇 항까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시 한번 불러 드릴게요.

제17항, 20항 및 2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18항, 19항 및 22항부터 32항까지의 법률안은……

여기서 아까 조배숙 위원님 22항 이의 있으시다고 하셨지요? 22항만 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는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이의가 없는 나머지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29항도 저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죄송합니다. 29항이 아니고 30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30항.

○곽규택 위원 22항과 30항은 좀 계류를 하시지요, 그냥.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잠깐만, 일단 의결 좀 하고요.

정리되는 동안 30항은 아까 따로 토론을 안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이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조배숙 위원 제가 시간을 3분밖에 안 주서 가지고……

교육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올라와서 교육부에서 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러면 이의가 없는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그리고 18항, 19항 및 23항부터 29항까지, 31항, 3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안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배숙 위원님, 이 안전 맞으시지요?

○조배숙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아까 토론이 없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한번 말씀 들어 보시지요, 어떤 이유인지. 교육부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이라고 그러는데, 간단하게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위원님, 토론을 종결했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위원님, 토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토론은 안 되고요.

○조배숙 위원 의견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대신에 의사진행발언 방식으로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특혜인데요.

(웃음소리)

○조배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때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시간이 3분밖에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요. 학교용지 조성 및 공급 등 특례의 대상이 되는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특수학교가 증가하는 숫자가,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40.5% 증가했는데 특수학교는 17.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2.0%라 특수학교 취학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강제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주민 부담의 증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그다음에 기부채납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보면 현금도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전의 투자를 기부채납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정의와도 관련된, 용어의 정의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교육부에 신중검토 의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조배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떠신가요? 이게 보통 기부채납은 그냥 현물,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는 그런 거거든요,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기부채납 대신에 현금으로 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기부채납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용어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원래의 기부채납과도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확신이 없어요. 이 취지는 알겠는데 현금을 기부채납 하느냐, 이게 맞는 것인지 또 그런 예가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혹시 장관님,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장관 최고진 실제로 특수학교를 새로 지으려고 할 때 위치나 이런 것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빠져 있었던 특수학교 용지를 집어넣어서 하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진행이 될 때는 꼭 특수학교보다는 증축이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현금 대체도 실제로 가능하고 그래서 크게 실질적으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갈등이 심할 경우에 이게 현물도 가능하고 현금으로도 대체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특수학교의 용지를 조성하는 데에 반드시 이번에 넣는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처리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실무자 중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현금으로, 현물이 아니고? 그것 확인만 해 주시면……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혹시 답변하실 실무자 계신가요?

누구신지 밝히고 말씀 주십시오.

○교육부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입니다.

현금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확한 법령은 모릅니다만 다른 법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었고요. 다만 현물 기부채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후에 가격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적기에 성사가 안 돼서, 그 부분이 학교의 적기 설립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부분으로 학교의 적기 설립을 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러면 충분히 의견을 들은 것 같으니까요 마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이의 철회하시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예, 이렇게 철회를 하면, 설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합의해서 처리하면 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교진 장관님, 차정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시5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4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건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지사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를 두며 강원자치도에는 민·관·군협력위원회를, 시군에는 시군 민·관·군협력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20조의2는 강원첨단기술단지 내 국유재산을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 위탁 대상 확대 및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아직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개정안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장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윤호중 장관님, 오늘 원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상정 계획이었는데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상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때는 이에 대해서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시키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오늘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이것은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방금 법사위원들 전체가 찬성해 가지고 통과를 시킨 겁니다. 5월 1일이니까 아직 사실은 1~2주 정도 숙려기간을 조금 경과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이것은 왜 숙려기간을 이유로 이렇게 미루는지, 이것 상임위에서까지 통과된 법인데.

장관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법사위에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된 것이니까, 이 부분은 부산에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좀 되어 있는 법입니다. 다음번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꼭 좀 상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윤호중 장관님, 이번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 이것은 사실은 공

무원과 일반 노동자들과의 차별화된 상황들이 이제는 좀 마무리되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없어지게 됐습니다.

○**송석준 위원** 형평성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과거와 달리 요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것 아시지요?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말씀에는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가짜 일 줄이기 그다음에 불필요한 그런 업무 풍토,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모시기라든가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혁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특별 민원……

○**송석준 위원** 자잘한 그런 게 공무원 사기 양양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나 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과거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도 경쟁률이 치열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고 그랬던 이유,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모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께서 공무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송석준 위원** 연금제도 아니에요, 연금제도.

공무원들은 유사시…… 장관님, 지금도 국가의 재난, 재해, 각종 비상사태가 터지면 공무원들은 무한책임 지잖아요.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무슨 일만 터지면…… 지금도 이렇게 노동절 날 휴일로 만들어 주시지만 공무원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비상시에는 그냥 동원됩니다. 지자체 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국가 주요 비상사태가 터지면 무한책임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국민에 대한 책임을……

○**송석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 보상……

○**송석준 위원** 이렇게 자잘한 예우 좀 해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연금체계가 과거에는 우리가 민간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희생적으로 일하고 퇴직 후에는 그래도 자부심 넘치게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연금체계는 그런 노후보장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다른 민간, 보다 보수 높은 데로 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이런 보람으로 하지만 지금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연금체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끔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보다 파격적인…… 이렇게 그냥 노동절 하루 조금 쉬게 해 준다 이것은 그냥 소위 말해서 위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의 생활 안정, 여러 가지 자부심을 느끼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옆에 인사혁신처장님이 와 계신데

요 많은 정책을 구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인사처장님이 확실하게 공무원들이 걱정 안 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처 업무이기는 한데, 지난 15년에 연금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연금개혁 할 때, 연금이 지금도 고갈되어서 국비를 7조, 6조 가까이 부담금을 국비에서 내고 있거든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때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연금개혁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정년을 좀 늦춰 가는 것을 예상하고 했습니다, 당시 2015년에는. 그런데 정년이 지금 늘어나지 않은 채 그냥 60세로 묶여 있어서 그게 소득 공백 기간이 조금 생겨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민간 부문부터 정년을 연장하면 그것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그렇게 되기 전이라도 사회공헌사업도 하고 재취업사업도 하고 해서 최대한 노후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보수체계라도 좀 현실화한다든가.....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연금은 분명히 중장기 국가재정 문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송석준 위원** 그렇지만 현재 복무하는 공직자들이 좀 자부심을 느끼게끔 또 고생한 것에 대한, 무한책임에 대한 인센티브는 뭔가 제대로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턱도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보수체계라든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저희들이 신상필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필벌’은 왜 나와요, 보상을 제대로 해 달라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중앙인사위에.....

○**송석준 위원** 책임지고 희생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니까 필벌이 나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중앙징계위원회에 올라오는 사안을 보면 필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마무리해 주시고요.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공직자를 그렇게 안 좋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생한 사람들 제대로 예우는 안 하고.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렇지 않습니다.

○송석준 위원 또 필벌을 자꾸 얘기하시면 다음에 혼나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김기표 위원 ‘필버’ 같아, 필리버스터?

○송석준 위원 필벌, 하지 마세요.

○김기표 위원 필벌…… 필리버스터를 하면 안 돼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장관님, 지금 5극 3특 체제에서 광주·전남이 통합되고 또 대전·충남 그 다음에 대구·경북 이렇게 되는데,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 되는데요. 사실 특자도를 설치할 때는 나름대로 비전과 희망이 있었는데 인근의 지자체가 이렇게 통합해서 거대화되니까 좀 위축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장관님께서 이것을 좀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중수청이 딱 반년 남았어요, 개청할 때까지.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가장 궁금한 게 중수청 본청 부지가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조배숙 위원 아직 논의 안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 준비단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딱 반년 남았는데 6개월 후에 개청이 가능할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수청법 시행령도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건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6개월 안에 새로 건물을 짓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중수청은 상당히 기밀스러운 또 개인의 정보 보호도 있고요 인권 보호도 있기 때문에 단독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6개월 안에 새 건물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현재 있는 건물 중에 적합한 장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것 이외에 본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사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디지털포렌식센터랄지 또 압수물 보관소 이러한 특수시설은, 특히 디지털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것 준비가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준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것은 인력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배숙 위원 사실 검찰수사관 중에서 중수청으로 흡수를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검찰청 수사관 중에서 중수청으로 희망하는 직원 파악이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정원을 먼저 정하게 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그러면 조직, 정원 아직 안 정했다는 말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시행령 사항이고요. 별도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시간은 6개월인데 금방 가거든요. 과연 6개월 후에 개청이 제대로 될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속도감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말씀 중에 5급과 3특이, 광역 통합특별시가 만들어지면서 5급은 커지고 3특은 차별받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5급과 3특은 위상이나 이런 것을 차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특성에 맞게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과 지원을 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마무리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행안부장관님, 제가 수차 말씀드렸는데요 대통령께서도 국가폭력에 의한 공소시효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배제해야 된다는 말씀.....

○박지원 위원 장관님도 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지원 위원 그런데 지금 5·18 정신적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법안이 행안위에 제출돼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장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국가폭력에 의해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공소시효도 없애고 빨리 진상 파악을 해서 국가가 명예 회복도 시키고 적절한 보상도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는데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내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 상정 예정입니다. 논의되고요.

○박지원 위원 그 법안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법안1소위에서요.

○박지원 위원 저도 행안위원장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주무장관으로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인사혁신처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병태 교수 잘 아시지요, 이번에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신?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신동욱 위원 전혀 모르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신동욱 위원 세간에 이병태 교수님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한 게 처장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아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분 임명할 때 인사혁신처에서 관여한 바도 없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전혀요.

○신동욱 위원 인사혁신처에서 이분은 검증……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신동욱 위원 업무가 전혀 아닌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신동욱 위원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한번 좀 여쭙보겠습니다.

이분이 사실 과거에 보수 쪽 인사였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막말 논란이 많았는데, 보수 쪽 인사였을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원색적인 비방이 많아서 그게 사실은 저희 쪽에 문제가 됐었는데 말씀하신 게 처장님 과거 어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처장님이 추천하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분이 마지막에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강남에서 밤에 술에 만취해서 여성을 성추행하려다가 그게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상당히 부적절한 기록으로 남았는데 그분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것 대통령 직속 위원회거든요. 그 부위원장이면 장관급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총리급이라 하기도 하는데, 성추행 이런 것들은 이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저는 잘 모르는 얘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동욱 위원 그래도 장관급 인사…… 지난번에 강선우 의원 얘기할 때도 텔레비전 보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세간에 화제가 되셨는데, 처장님은 대답하기 약간 곤란하시면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인사혁신처장이 장관급 인사가 어떤 논란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정무직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닙니다.

○이성윤 위원 통합 관련해서 보니까 전남·광주는 통합 열차가 출발했는데 30년 전에 출발했던 전북에서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전북도민들이 겪는 박탈감이랄까요, 소외감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저는 소외감이라기보다는 발전에 관심이 없다, 국가에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차제에 전북특자도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렇게 법사위까지 오게 된 것,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보고 느낀 게 무려 11개의 법안이 제출됐고 또 특례 조항이 54개였는데 이번에 통과된 것은 32개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통과됐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재정 부분, 조세감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32개가 아니라 38개가 수용됐습니다.

○이성윤 위원 38개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성윤 위원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재정과 조세감면 분야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까운데, 저도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조세라든가 부담금의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법안을 냈는데 이게 각 부처의 반대가 심해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자도법 같은 것을 만들 때는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 주무장관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가지고 이것을 넣지 않으면, 특자도법에 아무리 특례를 줘도 재정이나 조세감면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광역 통합의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특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에 따라서 달리 정하기보다는 전국적인 제도 운영의 차원에서 특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오히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성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전북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현대차가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성윤 위원 이 투자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규제도 풀어 줘야 되고 또 조세감면도 해야 되고 또 재정지원도 해야 되는데 이때 매 건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새만금에 투자가 많이 될 건데 장관님께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TF를 총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 말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가 TF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관님께서 주무장관이시니까 적극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헐고 또 이게 일시에, 일거에 투자가 잘될 수 있도록,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3분.....

장관님, 저도 짧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3기 신도시 중에는 최대 규모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져 오는 주택공급의 핵심 사업입니다.

왕숙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남양주 인구가 100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의 남양주시청 청사를 곧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행안부의 관련 기준, 행안부의 지침을 보니까 이전하는 신청사의 규모를 작년의 인구, 전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묶어 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3기 신도시가 개발돼서 수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모의 청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시청을 오고가면서 여러 가지 행정 편의 같은 것들 혹은 민원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시설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주차장 규모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뵈히 보이는 규모가 되는 것이지요.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행정 효율도 떨어지고 나중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증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효율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장래의 인구를 탄력적으로 반영해서 신청사를 짓는 데 설계할 때 미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 다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게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전문기관에서 미래 행정 수요라든가 앞으로의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안부 지침상 전년도 인구에 묶여 있는 이 부분이 좀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성장 속도나 민원 수요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행안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설계변경 권고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두고 현실적으로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 혹시 그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미 왕숙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된 지 오래되었고 또 입주 시기도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남양주시 신청사를 준공할 때쯤 되면 이미 인구가 늘어 있을 거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잘 알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잠깐 한마디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존경하는 장관님,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4·3사건에 대한 정의, 나치 전범에 준하는 국가범죄, 국가폭력, 장관님도 혹시 이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윤상현 위원 그것에 동의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동의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제주 4·3사건 전체를 보면 하나의 언어로 획일적으로 국가폭력으로 정의할 수가 없거든요. 초창기에 박진경 연대장—대령이지요—9연대장 그분이 국가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CNN 인터뷰에서 4·3사건은 공산주의자 폭동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제주도 남로당에서 무장봉기 폭동 또 그것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무고한 희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48년 10월 달로 가면 초창기하고 성격이 달라집니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보고서 보면 무장대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만 176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은 국가폭력이 아니라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거다. 그래서 이런 획일적인 규정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말씀 주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이를테면 한 3만 명에 달하는, 그 당시의 인구로 보면 제주도민의 10%거든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간에 희생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또 군경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그 안에……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그래서 후반부의 과잉 진압, 초토화 작전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초창기에는 공산주의자 폭동에서 시작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제가 보기에는 보다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박진경 씨의 경우는 과잉 진압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다른……

○윤상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 박진경 대령은 과잉 진압 명령 안 하셨어요. 그 밑에 한 성택 소령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잉 진압을 한 증거는 없습니다. 장관님이 한번 알아보셨으면, 한성택 소령 한번 만나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이 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경찰의 주민과의 대화 또 협상 이런 것을 가로막고 강경 진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점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상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제가 마이크 꺼져서 죄송한데, 그분은 강경 진압 명령 안 하셨어요 그분은 선무 작업만 하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한성택 소령한테 그 당시 진실이 뭐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과잉 진압 명령 안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 진실 규명은 또 별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토론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진실 규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중 장관님, 최동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인사처장님,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공무원들 사기 향상 방안.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4)

3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5)

3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7)

3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0)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9)

4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0)

4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1)

4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7)
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5)
4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7)
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6)
4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6)
4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7)
4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2)
50. 향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6)
51. 향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0)
5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2.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7)
6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3)
68.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1)
6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0)
7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9)

(17시2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70항까지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70항까지 이상 35건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예산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대부분에게 농사용 전기, 면세유 등을 지원하고 있고 농업경영체가 아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도 필요할 경우 현행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어 개정 실익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27조제2항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8조제1항제3호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는 산림복지지구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하여금 임업직렬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보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처는 산림보호직원의 채용 절차, 업무 난이도 측면에서 임업직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 및 보수 체계를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조업자 등이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등 부당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법 시행 이후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존의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

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0조의6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에 필요한 절차 규정으로 제2항에서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시도시사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여 체결하는 과정은 협약 체결에 필요한 일련의 연속된 절차이므로 위임하려는 행정입법의 종류를 달리 설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안 제10조의6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료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을 종전의 수의사에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확대하고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의 주체에 시도시사를 포함하며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21조제3항은 공수의의 해촉 사유로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위촉 자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임의적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속 위촉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촉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상실한 경우를 필요적 해촉 사유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양도·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7조제6호의2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금지품 등을 보유한 자에게 명하는 필요한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에도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조치명령의 유형이나 기한을 규율하고 있지 않아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현행법 제6조제1항에서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유효기간을 대한민국의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유효기간 도래로 해당 조항이 실효된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 부칙에 2025년 12월 20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시사가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현행법에서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위반행위 정도가 중하면서도 그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없어 그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으로, 개정안과 같이 불확정 개념인 정당한 사유를 추가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을 재량으로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37항, 제38항, 제40항, 제45항, 제46항, 제50항, 제53항, 제56항, 제58항 및 제6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1항, 제42항, 제44항, 제48항, 제51항, 제61항,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 및 제69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박은식 산림청장, 장인식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황종우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처음 법사위에 출석하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양강국, 해양부국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러면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먼저 토론하십시오.

○윤상현 위원 황종우 장관님, 이게 해수부 관련 사항이라 말씀……

천안함 폭침이 2010년 3월 26일이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16주년인데 당시에 천안함에 의해서 희생된 사병들이, 장교는 없었고 사병이 46명입니다. 그 당시에 금양호가 수색작업한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보고받고 계시지요?

그런데 수색작업 끝나고 귀환을 하다가 캄보디아 화물선하고 충돌됩니다. 그래서 선원이 9명 있었는데 2명은 사망하고 7명은 실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의사자로 지정을 하고,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의사자로 지정하고 국민성금으로 해 줘요. 그런데 금양호 선주 박 모 씨는 이것을 중고 선박을 구매하고 또 그 사람들 장례해 주고 뭐 전부 하는 데 15억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법원에다가 손실보상 청구했는데 안 받아들여 줘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의 사건이 났을 때 국가의 부름을 받고 어민이나 선박이나 가서 도와주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국가는 나 몰라라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그래서 민간이 국가의 부름에 의해서 요청을 받고 가서 하다가 돌아오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나 제도 개선을 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박 모 씨라는 분은 아주 생계가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감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이 한번 제도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앞으로 유사 사건에 있어서도 국가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민관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그 뒷부분 내용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따로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예, 그래 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박균택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박균택 위원** 농림부장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가급적 질문을, 발언을 자제하라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농림부장관님께 질문드리려고 발언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농업식품산업기본법 이것에 의하면 농촌의 개념을 읍면 지역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시의 동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그 동 지역 중에 광역시 구에 소속되어 있는 동 지역에 대해서는 고시를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농촌에 포함시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동 지역 중에, 국토관리구역 중에 주·상·공·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박균택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 시가 포함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고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정된 사례를 거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주가 됐든 대전이 됐든 해당 지역에 보면 생활환경이 농촌이고 또 주민들의 삶의 형태도 농민인 것이 분명한데 농촌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자치구의 동 지역도 농촌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 조건은 국토계획법상에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녹지지역이 있는데 녹지지역의 용도가 생산·보전 녹지지역 이렇게 있으면 그게 해당이 되고요. 또 관리지역 중에서 생산·보전 관리지역 또 농림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자치구의 동 지역 중에서도 일부

는 농촌지역으로 감안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정을 받는 곳을 저희 광산구에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행정기관의 명칭, 지역의 명칭이 읍인지 면인지 동인지 또는 군이나, 구냐 이게 농민들 본인들에게는 전혀 중요치 않은 사항인데 국가기관이 임의로 정해 놓은 행정명칭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고 하면 그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업인에게는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 농업인이 어느……

○박균택 위원 아니, 농촌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 혜택의 차이가 큰데 왜 차이가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아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별할 수 있어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농업인이 어디에 거주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달리 지원을 하고 안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균택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이십 가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박균택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농촌 기본법 이 부분 개정안을 한번 발의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균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황종우 장관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 인사를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인사들이 많았어요. 특히 오늘 박은식 청장님 전임 김인호 청장님, 산림청장이 산불 기간에 음주 운전하는 게 영상으로 뽕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뜨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인사들이 있었던 이재명 정부지만 그래도 황종우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걸 보고 그래도 이 정부의 내각 임명 중에 제일 잘한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품이나 실력이나,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송미령 장관님, 지난 정부의 각료로서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 정부에서도 각료 생활을 하시는데 감회가 많이 새로우시지요? 지금 이제 한 1년 또 다가오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또 참 잘하는 게 하나 있다. 본인이 직접 규제합리화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규제의 합리화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고개를 끄덕임)

○송석준 위원 아니, 끄덕거리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석준 위원 그러면 농림부장관님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부응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 박병원 전 관료, 경제 분야에 계셨던 분이 쓴 글 혹시 읽어 보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직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한번 읽어 보세요.

이번에 추경을 한다고 그래요.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쟁 추경이라는 좀 섬뜩한 표현을 썼지만 이미 전쟁 이전에, 우리 경제가 지금 최악입니다. 지금 우리 서민경제, 지방경제 최악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 25조를 푼다고 하지만 언 발에 뭐 누기 식이지요, 언감생심이고.

자, 그래서 경제활력을 살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농지 규제가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 자주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석준 위원 그래서 좀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특히 다시 도시 용도로 꼭 필요한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하시고, 그래야 돈이 돕니다. 민간자본이 알아서 돌아서 서민경제, 특히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경제가 사는 거예요. 전국, 특히 지방 경제,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이 힘들단 말이에요.

농림부에서 바로 확실한 규제개혁안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한번 보고해 주시고 칭찬받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석준 위원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송석준 위원 대통령한테 칭찬받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해수부장관님, 축하합니다.

송언석 위원이 칭찬하는 것 보니까 아주 좋으신 분 같아요.

○송석준 위원 선배님, 저 송석준입니다.

○곽규택 위원 사과하세요!

(웃음소리)

○박지원 위원 저는 송석준이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서 송언석이라고 했어요.

지금 추정 하잖아요. 농식품부장관하고 똑같이 해당이 됩시다라는 농수산물의 양식, 다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선, 연안 여객선, 화물선 이 모든 것이 도서지방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런데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이번 추경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얼마나 반영됐는가는 제가 아직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어떻게 됐든 앞으로 추경을 하더라도, 종전이 언제 될지도 모르지요. 또 종전이 되더라도 에너지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도서지방, 여기는 어선도 문제고 연안 여객선, 화물선 이런 것들이 끊기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해수부가 계속 면밀히 보시고 지원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박지원 위원 한 가지, 전 장관들 때도 해결이 안 되고 약 3년간 이게 지속되고 있는데 전복이 과잉 생산되건 소비가 덜 되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완도군의 경우 전국 전복의 약 칠팔십 프로가 생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가두리를 감축해서 생산량을 줄이자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어선을 감축할 때도, 택시를 감축할 때도 보상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두리 감축하는 데는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양식업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장관께서 새로 부임했으니까 이 전복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농식품부장관한테 질문을 또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1분을 더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지원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예, 1분 더.

○박지원 위원 농식품장관도 지금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또 저하고 전화 통화했으니까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무기질비료 같은 게 이번 추경에 충분히 보상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농기구 자재가 다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보시지만……

대과 이번에 파손하는 데 그 보상책은 다 강구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진도 대과 일부에 대해서는 시장 격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채소가격안정제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격차 보전을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발표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일부는 도에 알려 드렸고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그걸 파악해 가지고, 저도 연락할 테니까 추가적으로 잘 좀 도와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저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예,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해양수산부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감사합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장관님도 지금 임시청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워낙 바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별도로 축하말씀은 못 드렸고.

지금 임시청사로 온 이후에 해양수산부 직원분들께서 아직까지 가족과 함께 이주를 못 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생활에 굉장히 불편이 많으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곽규택 위원 지금은 임시청사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본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혹시 본청사 이전하는 그 계획은 언제쯤 발표 예정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올해 일단 어디에 신축을 할지 장소를 정하는 게 먼저고요. 그다음에 그 장소가 정해지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28, 29년에 공사를 해서 30년 정도에 신청사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여러 가지 감안 요소가 있겠지만 지금 임시청사가 위치한 동구 지역 그 쪽이 부산역이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당분간 세종시라든지 또는 서울과 이동에 있어서는 제일 유리한 입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항 재개발 지역에 종합청사가 들어오는 지역들도 밀집된 지역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가 부산 서구동구인데 서구에 공동어시장 있는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현대화 사업이 작년 연말에, 10년 동안 못 하고 있던 걸 작년 연말에 겨우 첫 삽을 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수산업 종사자분들께는 굉장히 큰 관심사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저도 현장에 찾아가서 애로사항들을 다 체크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박은식 산림청장님, 49항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여기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십시오.

○산림청장 박은식 저희는 청원산림보호직의 처우 개선이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또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러면 기획예산처와 다시 정리를,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은 지금 요청한 것처럼 계류를 하고 다음 회의 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제41항, 제42항, 제44항, 제48항, 제51항, 제61항,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 및 제6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 제40항, 제43항,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제50항, 제52항부터 제60항까지, 제62항, 제63항, 제68항 및 제7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황종우 장관님, 박은식 청장님, 장인식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3)

7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7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7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7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7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8)

7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9.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8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8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82.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8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8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8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7시5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 71항부터 제85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85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5건의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도 사회공헌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는 반면 관련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기업도 관계기관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재편 권고는 핵심적인 경영 사항을 직접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업의 사업재편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려는 의미라는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1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변리사의 사명을 법률에 명시하고 변리사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 등을 규정하며 변리사의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변리사의 준수 사항인 안 제7조의4와 제7조의5는 특허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변리사의 비밀유지권 도입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비밀유지권의 대상 중 수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부분은 변리사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삭제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리사의 감정 업무 수행 시 준수 사항의 내용이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며 변호인 조력권에 기초한 비밀유

지권을 다른 직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가액 감정 업무가 변리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정 업무를 변리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 간 충돌된다는 이유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2항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정경제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 및 재사용사업자의 등록,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검사,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적용 대상 중 건설기계와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사업자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 또한 보험가입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규정, 청문 실시 근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재제조사업자 등록과 전기자동차등배터리에 대한 성능 평가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시행일과 제정안의 관련 규정 시행일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제정안의 세제 지원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적용 범위에 건설기계와 농업기계를 포함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사용후 배터리로 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공공거래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의 구역을 경미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구역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제2조제1호에서 전통시장을 정의하면서 전통시장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전통시장 인정이나 구역 변경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의 인정과 구역 변경에 관한 절차의 대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후 경미한 구역 변경에 대하여는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75항, 76항, 85항 등 3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71항, 72항, 73항, 74항, 77항, 79항, 80항, 83항 등 8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지식재산처장님, PPT 좀 같이 보실게요.

지식재산처는 지금 국무회의에 들어가진 않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들어갑니다. 배석자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최혁진 위원** 들어가세요?

PPT 좀 올려 주세요.

처장님, 아마 수도 없이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 가지고 법사위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처장님을 뵈어 일이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 계속 제보가 들어옵니다. 대통령께서 나라에 돈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우리 공공기관들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런 세금이 새 나가는 거 아니냐,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부처가 좀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황당했습니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처 산하기관이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최혁진 위원** 발명진흥회에 대한 제보를 보니까 우리 국가 예산 가지고 행사 기념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그 돈은 다 입금하게 돼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직원 회식비로 펍 펍 쓰셨더라고요. 더 황당한 거는 이에 대해서 지식재산처의 답변입니다.

그 전 장이요. 아직 넘기지 말아 주세요.

‘어차피 입금시켜도 다 수고했으니까 회식비 등으로 쓸 건데 그 돈 받은 거 미리 쓴 게 뭐가 문제냐’ 이게 답변이에요. 정말 제가 황당했습니다. 아니, 국세청 직원이 체납된 세금을 예를 들어 현금으로 받았다 쳐요. 그러면 내가 포상받아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입금 안 시키고 밥 먹어 버리고 잔액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다음 페이지 보세요.

법률자문 받았더라고요. 그렇지요? 법률자문을 이와 관련해서 받았어요. 반드시 환수하여야 한다, 필수적 고발 대상이다, 업무상 횡령이다, 진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지 저렇게 나오니까 다시 법률자문을 또 받아요. 그건 국가 돈이 아닙니까? 세금이 아닙니까? 뭘 가서 얘기했는지 법률공단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법무법인에서 받아 가지고 소위 통치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또 문제가 됐지요. 그렇지요? 법인카드 마구마구 쓰다가 문제가 됐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물어봤어요. 이 관련된 자료내역 다 보고 ‘누구하고 쓴 거냐, 이거 도

대체. 이렇게 평평 평평 평평. 왜 조치가 안 되냐?', 답변이 가관입니다. '동석자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렇게 한 줄 해 가지고 의원실에 보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동석자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백날 얘기하시면 뭐 합니까. 지식재산처는 뭐 하고 앉아 있습니까, 도대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하시니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언터처블(untouchable)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런저런 입법 이런 거 가져오시기 전에 지식재산처 산하기관들 방만 경영 문제 제대로 손보십시오. 제대로 조치하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 광규택 위원님.

○광규택 위원 의사일정 84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처에서 발의하신 법안인가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의원 발의입니다.

○광규택 위원 이게 지금 변리사의 일부 업무 권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비밀유지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전문 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 이런 부분을 규율하는 법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전문 직역을 굉장히 세분화를 해 놓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한정적으로 이렇게 딱 규율돼 있는데 이거 선을 넘어서는 어떤 입법을 하게 되면요 꼭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다른 전문 직역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자꾸 사회적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관련 협회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시급한 필요성이 있거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개정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특히 변리사법 같은 경우에 비밀유지권을 변리사에게도 신설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비밀유지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인정해 주는 입법을 한 것도 최근이었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그렇게 입법 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정한 요건을 해서 인정했던 것인데 이것을 변리사에게까지 지금 당장 인정해야 될 시급한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데에는 굉장한 의문이 들거든요.

이 법은 조금 더 법사위에 계류를 하시고 다른 변호사협회라든지 또 감정평가사협회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처장님?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간 충분히 관련 협단체들과 의견을 계속 나누어 왔고요.

이 변리사법, 이것은 직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변리사법 개정 사항들은 변리사법 2조에 변리사는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한 특허 등에 관하여 대리하고 그 사항에 대해 감정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 명시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현재 법원과 국세청에서 법령 해석에 따라서 지금 이미 참여하고 있는, 같이 감정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기존의 변리사가 하고 있는 가치평가들을 체계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역을 확장하거나 저촉되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규택 위원** 그러면 대한변호사협회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개정에 대해서?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감정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곽규택 위원** 반대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이 감정에 대해서 일부 경제적 가치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실무적으로 법원에서 현물출자나 또 국세청에서 상속·증여세 관련해서 특허평가를, 감정평가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요.

○**곽규택 위원** 지식재산처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변리사시험 볼 때 시험에서 조금 이익 보는 부분이 있지요, 자격 얻을 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1차 면제, 2차 일부 면제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지식재산처장님은 특히 변리사협회에만 유리한 발언을 하실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비밀유지권 관련해서는 변리사에게 비밀유지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 비밀유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들에 대한 권리,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피지컬 AI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참 좋습니다.

제가 85항 사용후 배터리 관련해서 좀 여쭙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미래의 첨단산업 또는 미래 핵심산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단

가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성윤 위원 아까 방금 통과한 전북특자도법에 보니까 미래의 첨단산업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전북에 전북지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걸로 돼 있던데, 그러면 현재는 초기 단계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지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나 ESS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의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사용후 배터리 업계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반을 만드는 취지입니다.

○이성윤 위원 제가 발언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203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30조 원, 세계적으로 260조 원 정도 큰 산업이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성윤 위원 85항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조세·세제 지원하는 특례 부분은 이미 다 행안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삭제하는 걸로 동의하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성윤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상의 사용후 배터리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부 의견은 국토부가 철회를 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리고 하위 법령 개정 시에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잘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리고 19조 3항을 보면 사용후 배터리 공공거래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관님 그거 어떻게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게 여러 부처가 하다 보니까 저희 부처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었는데 국토부도 연관이 되고 재정부도 연관이 돼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걸로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다양한 부처가 관련된 사항이니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관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동의합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방금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안이 82항인 것 같습니다. 82항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성윤 위원 예, 82항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예, 82항.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윤상현 위원님이 더 먼저 드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 70% 또 천연가스 20%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 이것은 이란 핵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에너지 수급 구조지요 이 개선을 미리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 부랴부랴 사우디, UAE 또 카타르지요, 카운터파트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전에 이런 위기가 올 거라고 예측은 분명히 했을 텐데 대체에너지 공급 통로라든지 아니면 대체에너지 수입원·공급원 이거에 대해서 왜 준비를 안 했지요? 산업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미리 혹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걸 단기적인 부분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유사들의 구조가 아쉽게도 중동산 중질유 기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중질유가 계속 있어야 되는 파트에 있어서 굉장히 그 산업구조를 바꾸기 어려운데 그 파트 관련해서 금년 초부터 저희들이 비축유 관련해서 계속 조금씩 상황에 대해서 준비는 해 왔었는데 우리 구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중동 중심으로 원유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시다마는 저희들의 원유 수급 구조, 에너지 수급 구조를 더 다변화시키고 대체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안보에 일단 실패를 했다. 그래서 대체에너지 수입원·공급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무엇보다도 저희는 다변화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다변화, 그러니까 호주나 미국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호주, 미국……

○**윤상현 위원**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윤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로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플랜은 있으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난 정부 때부터 해서 저희들의 기본 생각은 중동산이 한 50% 정도는 낮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하루이틀, 일이 년 사이에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50% 아래로 내려가는 게 저희들한테는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단기적인 목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추세였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한 73% 정도에서, 지금 현재는 한 69% 조금 소폭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송석준 위원님이 아까 손을 먼저 드셨습니다.

○송석준 위원 김용선 처장님, 변리사법 이게 81항으로 돼 있나요? 84항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81항입니다, 81항.

○송석준 위원 81항이지요? 이 81항에 대해서 관계 기관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겁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송석준 위원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건을 제기하고 또 변호사 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이렇게 이건을 제기하고 또 지금 여기 법안 검토보고에서도 관계기관 이견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충분한 협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아니, 변리사가 지식재산처의 관계자들이 퇴직하면 가는 동네라고 해서,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직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옹호하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면 되겠어요? 지금 이런 관계 협회에서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흥분하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안을 밀어붙이면 되겠어요?

우선 이게 가치평가 업무잖아요. 가치평가 업무에 대해서는 업역상 감정평가사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보는 거고 또 변리사는 변리사의 전문성으로서 소송을 지원하든가 여러 가지 그 고유 영역이 있잖아요, 전문가로서 판단하는 영역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업역을 같이 침범한다라는 그런 거를 주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면 정당성이 떨어지지요.

관계 법에서도 보면 다른 법에서는 이미 허용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변리사 영역이 발명진흥법이라든가 기술이전법 이런 데서는 이미 참여를 하잖아요, 변리사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고 다만 상법이라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런 중요한 조사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상거래에 관한 중요 판단 그런 가치평가에 관해서는 고유 업무를 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들의 영역이 있는데 그 법에 명시적 근거도 없는 것을 마치 이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전제로 해서 규정을 두면 법리상 충돌이 오고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협의를 했는지 관계 단체에서 명백하게 이의 제기를 하는데도 ‘협의를 잘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국회에 대한 모독 아니에요? 그리고 또 관계 단체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지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여야가 다 만장일치로 합의되어 온 겁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이렇게 설령설령…… 이게 약간 전문성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쉽게 상임위에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법사위 여기 와서 관계 단체들도 이거 문제 제기하고 이거는 보류해서 제대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 법안의 내용은요 새로운 감정평가 업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라 기존에 변리사들이 법원이나 국세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가치평가에 대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법무부 다 동의하고 있고요. 감정평가사는 기존의 변리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내용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금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그러면……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법안에 변리사는 법원이나 지재처에 대해서 특허 등을 대리하고 그거에 대한 감정을 한다, 법에 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오래전부터 법원이나 또 국세청에 대해서 전문감정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 지재처에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그러면 문구에 이분들이 우려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식으로 명시적으로 문구를 다듬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이거 업역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송석준 위원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상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다루는 것과 발명법에서 다루는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이미 상법상……

○송석준 위원 발명법에서는 변리사가 참여하는 창구를 분명히 넣었고 여기 있는 상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거를 지금 새롭게 마치 변리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변리사법에 규정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아닙니다. 기존의 변리사법에요……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관계 기관하고 좀 더 협의를 거쳐서 그런 오해를 풀고 그다음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세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그것과 관련해서요 법원과 법무부에서 충분히 동의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자, 잠시만요.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어디가 동의를 해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법무부와 법원이……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처장님, 잠시만요. 제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죄송합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관계 단체들 다 동의했다는 얘기에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진행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님, 그래서 계류시키자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송석준 위원** 예, 계류해서…… 관계 기관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데 서로 문제가 없으면……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래서 그거는 여야 위원님들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정도 질의하셨으면 충분히 의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처장님, 저 안 끼어들려고 그랬는데…… 아니, 변리사한테 비밀유지권 주는 게 어떻게 업역과 관련이 없습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자주 하시면 곤란하지요.

저도 변리사한테 비밀유지권 주는 게 맞는지, 변호사단체의 주장처럼 안 맞는지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거는 변리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 비밀유지권을 주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충격받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처장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업역과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변리사하고 변호사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변리사한테 비밀유지권을 주면 그동안 변리사들에게 비밀유지가 잘 안 된다고 판단해서 변호사에게 업무 가져가던 분들이 변리사한테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리사들이 비밀유지권 달라고 하는 것이고 변호사들은 우리가 만든 것을 변리사가 가져가니까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계류시키시고요. 아니, 전혀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처장님은 앞으로 변리사 업무 하실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말씀 여기서 끊겠습니다.

김정관 장관님, 반도체는 용수·전력이 가장 핵심적이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최근에 불거진 얘기를 들어 보면 4대강 보 해체 얘기가 나오면서 여주보에서 공급받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문제를 걱정하는 분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까지 비약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호영 전북지사 출마 예정자가 ‘내란 극복은 전라북도의 새만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가지고 가는 것이 최종적인 퍼즐의 끝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실제로 여주보를 해체하면 용인 클러스터 용수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저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물이 중요한데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4대강의 여주보를 허물어서, 자연을 재자연화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허물어서 이렇게 하루가 바빠 변하는 산업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건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장관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경쟁력, 국가적일 뿐만이 아니라 초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품목이고 전략산업입니다. 어느 지역에 따라서 이런……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런 업체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지만 저희는 이런 업체에 대한 경쟁력에 어떤 빈틈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신동욱 위원** 보를 더 만들어서라도 용수 문제 이런 거 걱정하지 않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단지 보수 정권에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해서 그 보를 해체하겠다고 하는 이 발상이 저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 생각에는 반도체 공장의 부품이 다양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부적인 걱정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반도체업체가 특정한 프레임이 너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서 혹시 전시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안보적인 차원에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저는 타당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가 제공해야 될 인프라가 부족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 위원** 반도체가 너무 집적화돼 있어 가지고 전쟁 걱정하시면 용인 클러스터는 왜 만들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최근에 전쟁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동욱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본 것은 용수 문제를 말씀드렸고 지금 물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만들어 놓은 보를 해체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장관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주보를 해체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공급되는 물의 수원을 상당 부분 약화시키는 것이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용인 반도체, 여주보를 해체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위원님한테 들었는데 저는 반도체……

○**신동욱 위원** 아니, ‘그렇다면’요. 전문가로서 여쭙보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마무리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반도체를 물이 부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용인 지역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위원님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지금 저녁 식사 시간 등을 고려한 정회를 해야 하나 여야 위원님들 사이에서 정회하지 않고 신속하게 회의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자라고 합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 없이 회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토론하실 때 꼭 필요한 것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지식재산처 처장님, 변리사법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동안 비밀 유지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비밀유지권이라는 게……

○서영교 위원 있었냐고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게, 사실 우리나라는 비밀유지권이 없었는데요. 국제 특허소송에서 국내 변호사나 변리사가 자문서·감정서 이런 것을 이런 문제에 대응해서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서 제출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비밀유지권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예양에 따라서 우리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비밀유지권을 인정받아 왔는데 이번에 변호사법……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상대는 비밀유지권이 있어서 안 내는데 우리는 내놓고 그랬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그동안 국제예양에 의해서 인정받았는데 이번에 변호사법에 비밀유지권이 반영됐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법 이야기하면서 나오니까 이 자체가, 변리사도 그렇고 의뢰인도 그렇고 그러면 기술을 보호한다고 소송 중에도 내놓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건가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도 충분히 의미 있게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변호사법 비밀유지권은…… 윤석열 정권에서 변호사들이 계속 털렸어요, 압수수색당하고. 그러면서 ‘정권이 압수수색을 함부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까 법원행정처·법무부는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대한변협에서도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하셨던 것, 거기까지 하시고요. 또 이유는 다 있고 할 텐데 이것을 털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위원님……

○서영교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중기부장관님, 새벽배송…… 그렇지요? 중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새벽배송 하라고 하는 건지. 합니까, 안 합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현재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보세요. 새벽에,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데 물건을 새벽에 떼어 와요.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또다시 물건 진열하고, 하루라도 일찍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밤늦게까지 일해요. 그런데 이것을 새벽에 또 다른 데 배송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 죽어요. 소상공인들이 무슨 재주로 새벽배송을 합니까? 그리고 다른 데하고 경쟁하려면 그래야 돼요.

쿠팡의 새벽배송을 막으세요. 쿠팡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쿠팡 새벽배송을 막고 소상공인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벽배송 하지 않게, 그것 강제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 주고 그래 왔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들어섰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 제가 차관하고도 얼마 전에 통화했고 장관하고도 말씀 나눴습니다. 국회 계단에 전국에서 수천 명이 왔어요. 대표로만 와도 수천 명이에요.

제 어머니가 옷 가게 하셨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동대문 평화시장, 남대문에서 물건 떼어 오고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또다시 진열하고 그리고 밤 10시, 11시까지 장사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나가서 물건 떼어 오고, 이 삶이 소상공인들의 삶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더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데 가서 새벽배송을 한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새벽배송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죽습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 말고는 못 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이런 발상이 나왔지?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발상이지? 그런데 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은 안 된다, 아니다 말을 못 하시지요? 말씀을 하셔야 우선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마트 이런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 하는 것을 열면 세상 큰일 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쿠팡의 새벽배송을 막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또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도 있고요. 또 국회에 와서 하신 현장 내용도 많이 들었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 잘 살펴보고 방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답을 못 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러면 이 정도로 하시지요, 위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의 어려움, 현장 속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꼭 전달하십시오, 제가 또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여야 공히 81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셔서 이 부분은 전체회의에 한 번 정도 계류하고 추가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 보류하고요.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보류시키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아니요. 한 번 정도만 보류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그 말만 안 달면 될 텐데.

○송석준 위원 그것을 또 한 번으로 한정을 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가야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75항, 76항 및 8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4항까지 및 77항부터 80항까지, 83항, 8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2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1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장관님, 한성숙 장관님, 김용선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 8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9)
 - 8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4)
 - 8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5)
 - 8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3)
 - 9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6)
 -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7)
 - 9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0)
 - 9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5)
 - 9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6)
 - 9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7.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출)
1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출)
1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출)
10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출)
11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출)
111. 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출)

(18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6항부터 제111항까지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86항부터 제111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6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7항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대학원의 설립·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은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15조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재정경제부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는 마약류범죄에 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신분비공개수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문의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에게 특정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의료사고 내용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되 이러한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의 의사 표시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조정의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되 책임보험 등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확대하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에 수사기관,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 등이 해당 위원회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여부 등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부장관은 그 심의기간 동안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따른 조정 등이 성립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중대한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나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설명의무 위반 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중 안 제54조에 대해 민사조정법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민사소송법상 화해가 성립한 경우를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제외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서본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7항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여러 조치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책임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부칙 제2조에서 5조까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1항 환자기본법안(대안)은 복지부장관이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장이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진술 및 조사결과는 재판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 보장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환자안전사고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등이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활용되고 해당 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재판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에 대하여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유무를 수사·재판하여 징벌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해당하고, 또 자유심증주의하에서 특정한 진술 등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은 체계상 맞지 않고 입법레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복지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재판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주서본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86항, 91항, 94항, 98항, 101항, 103항, 109항 등 7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87항, 88항, 89항, 90항, 92항, 93항, 95항, 96항, 99항, 100항, 104항, 105항, 108항, 110항 등 14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정은경 장관님, 저희 상임위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좀 논의 해 보고 싶었는데 회의를 안 잡아 줘서 정은경 장관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때 질병관리청장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나경원 위원 매뉴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이물질 신고가 있으면 식약처에 품질검토를 요청해야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공동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이물질 신고가 1285건이 있었는데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답변을……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저희 청 소관……

○나경원 위원 아니, 정은경 장관 대답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질병관리청장이었으니까, 지금 감사원에 대해서 열어 주지 않고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직접 책임자는 정은경 장관이니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물질 백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약처와 공동 매뉴얼을 만들었고 또 예방접종추진단에……

○나경원 위원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추진단에 식약처의 품질관리 담당자가 파견을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위원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전화로, 유선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자,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부분의 백신에 대한 매뉴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일본도 그 당시에 163만 회분을 즉각 폐기했습니다. 독일도 비슷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룰인데 우리는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 국민들께 그대로 접종시키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은 이물 백신에 대해서는 접종한 적이 없고요. 제조번호가……

○나경원 위원 아니,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 접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은 백신의 위해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접종은 시행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매뉴얼이라든지, 왜 독일이랑 일본은 그것을 폐기했습니까? 그것이 국제적인 백신 매뉴얼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2020년 독감 당시에 61만 회분 즉시 회수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해도의 원인에 따라서 처리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 이것은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매뉴얼에 따라서 통보하시지 않은 정은경 장관께서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요. 그것이 안전하나 아니냐는 정은경 장관, 질병관리청장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처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것은 괜찮으니깐 맞혀도 된다? 국민들은 1420만 회분이 그냥 투약됐습니다. 이것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2020년 독감 당시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물질 신고가 되니까 바로 61만 회분을 폐기했는데 한마디로 K-방역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께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 이것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지세요. 저는 정은경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읽어 보셨을 겁니다, 책임지시고요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지금 사과의 문제로 갈 것이 아니다.

저희가 직무 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매뉴얼 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백신에 대한 관리 기준에도 맞지 않고 본인이 이것을 마치 식품안전처 담당자인 것처럼 판단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요.

특히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니까 다 관리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작년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두 가지만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2800명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현재 27명밖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속도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질병관리청장은 이번에 어렵게 행정법원에서 심근경색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했는데 항소를 하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가 항소포기 왕왕 하면서 이것은 왜 항소를 하는 겁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지만 이 부분은 국가 책임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인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합니까? 다른 큰 사건들과 왜 차별합니까?

저는 정은경 장관이 매뉴얼에 따라서 통보하지 않은 것, 그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하시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정은경 장관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복지위에서 정리하고 올라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이것은 식약처 법률입니다.

○박은정 위원 여기에 지금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 권한을 검사하고 사법경찰관리에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수사에 관한 권한이 중수청으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들어 있는 이 수사권한에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지금 말씀드리면 개정안 4조의2부터 4조의10까지에 수사의 주체로 검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이게 시행 유예기간을 1년을 두고 있어서 중수청이 출범하는 기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검사의 수사권한을 빼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정은경 장관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의료분쟁조정법 있잖아요, 이번에 개정안 왔는데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과도한 형사 리스크 때문에 의사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료계 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이 개정안 2조의2에 있는 중대한 과실을 정의하면 민사 책임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중과실 판단이 법원마다 달라 가지고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형사 리스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유형화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 조문 자체의 예측 가능성, 현저히 범위를 벗어난, 중대하게 위반한 이런 규범적 요소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고 있어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잘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오히려 분쟁을 부추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러면 이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이 자동차 교통사고 분쟁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54조의 내용이 반의사불벌 제도하고 비슷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것은 과도한 주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의무 이행이나 책임보험 가입이나 조정 또는 재판상 합의까지 모두 충족해야지 특례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규정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손해배상이 전액 이루어진 경우에만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이렇게 의료분쟁조정법이 만들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피해자의 회복과 더불어서 의료인들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좀 줄여 주는 좋은 법이 마련이 되었다고 보는데 장관님이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만을 위한 법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자분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서 신속하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못 받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해결하려고 법을 개정하게 됐고요. 또 의료인들은 고위험 필수의료로 기피하지 않고 국민들이 긴급하고 아주 위중한 그런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양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검사일 때 의료 전담을 하면서 의료사고 수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십몇 년 만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의료분쟁 현장에서 이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리고 형사 특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설명의 의무를 꼭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여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하는 그런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받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남용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 정은경 장관님, 진짜 K-방역의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좀 환상이 깨졌습니다.

지난달 감사원 코로나 대비 태세에 대한 조사 결과 보니까 당시 백신의 이물질 신고가

1285건 있었고요. 위해물질 이산화규소·곰팡이·머리카락이 들어간 건수가 127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위해물질 백신이 있으면 같은 제조공정에 있는 백신을 전부 폐기를 하든지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2021년 8월 달에 그런 위해물질 백신이 있어서 160만 회를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님, 그때 통보받으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제가 그때는 근무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윤상현 위원**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받은 분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아니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받지 않았지요? 장관님이 그냥 유선 통보라고 했는데 유선 통보가 아니라 품질 검토 요청했어야 되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 지적받았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그때 혼자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박능후 장관이나 권덕철 장관하고 상의하셨습니까? 혼자만의 결정이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것은 예방접종추진단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윤상현 위원** 그렇게 결정하셨지요? 그런데 동일 제조공정 백신 1420만 회가 그냥 강제 접종이 됐어요. 사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코로나 사망자가 2802명이었고요, 이상반응 증상이 48만 회가 넘고요, 중상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백신에 문제가 있었으면 사망이나 여러 중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하고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국가는 당연히 그것을 검토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시다.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 이게 연관관계가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향후 감염병 시스템에 있어서 단지 행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든 보장하기 위한 국가관리 구조적인 시스템을 증진시켜야 돼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오히려 진상 규명에 더욱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자체적인 조사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문제 된 것을 이력을 한번 다 복기를 한다든지, 트레이스백(traceback)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게 안 나타나도록 하는 게 장관님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진상 규명에 적극 도와주셔야 돼요, 장관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진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좀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청, 식약처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물 백신에 대해서는 이물이 확인된 백신은 이미 분리 보관되고 폐기돼서 접종에 사용되지는 않았고요. 단지 그 제조번호가 동일한 백신이 안전하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백신의 원액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해

서 접종이 진행되었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돌이켜보면 좀 더 조사를 빨리 했거나 위험도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거나 하는 그런 보완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장관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없이 가기로 해서, 지금 토론을 다 하시면 정회를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꼭 해야 되시는 위원님들이 아니시면, 아니면 하시더라도 좀 간략하게 줄여 주시면 정회 없이 저희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론을 계속 이어 가시면 조금 이따가 정회를 부득이하게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정은경 장관님, 의사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줄기세포 관계를 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최고인데 지난 26일도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첨단재생의료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국민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안전성이나 유효성 또는 유료로 서비스를 하는 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일본도 중국도 우리 의술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일본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규제가 저희보다 좀 낮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나라마다 제도가 좀 다릅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못 하나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우리나라는 그걸 처음 도입하면서……

○**박지원 위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혹은 중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비를 좀 추가로 확보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원정치료 가는 부분들을 좀 더 근거를 만드는 연구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원하겠다고요? 여기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면 뭔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좀 더 강화하는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왜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대통령님 말씀이 있으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겠다라는 게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박지원 위원** 저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명확

한 관계를 한번 복지부장관께서 발표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침단재생의료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
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회 운영이나 아니면 심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는 그
런 상황이어서요, 위원님……

○박지원 위원 그러면 정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언제쯤 가능하다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올해 안에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나 심의 기준 같은 것을 좀
더 보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상적
인……

○박지원 위원 ‘신속히’의 의미는 언제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지원 위원 ‘신속히’의 의미가 언제까지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올해 안에는 개편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올해 안에요?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박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규택 위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이게 지금 제정법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박규택 위원 그런데 지금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게 제
정법인데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공청회 같은 것도 한 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반대를 하셨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제정법 같은 경우는 그런 논의
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 이게 지난 국회에서부터 계속 제기가 돼서 공청회나 간
담회를 계속 진행해 왔던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계 또 의사인력추계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원 확보나 이런 것을 좀 같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
다.

○박규택 위원 학자금 지원하는 대신에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이 방
식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지금 찬성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의사협회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
기를 일부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충분하게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
원을 하고 또 유사한 의무복무 제도하고 비교를 해 보고 또 국민건강권을 확보한다는 그
런 취지 자체를 가지고 이게 위헌의 소지는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택 위원 그런데 국민 건강도 중요하고 지역의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다
니는 동안에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15년간의 어떤 직업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제가 보기
에는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남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국립의학전문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마치고 하면 한 30살쯤 될 텐데 15년간이면 45살까지 공공의료기
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라,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한 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계류를 해서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의료계의 이야기도 좀 들어 보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저희가 전국 단위로 공공의료에 헌신할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입학할 때부터 의무복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알고 그런 것에 헌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위험 소지가 없게끔 제도 설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오유경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용 생리대에 최근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과불화화합물, 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유형의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과불화화합물의 경우에는 특정유해물질로 규정을 해서 생리용품에서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해물질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전관리체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생리대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식약처도 생리대 안전관리에 굉장히 엄격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사업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실제로 이런 여성 생리대의 경우에는 피부에 장시간 밀착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 제품의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이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도가 매우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불안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약처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대를 안전관리 하는 국가책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 체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이미 식약처에서는 생리대의 안전성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세포독성 시험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전현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로운 유형의 유해물질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준을 새로 마련을 하고 미국처럼 PFAS 등에 관해서는 생리용품에서 금지하는 이런 기준을 세우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거나 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전현희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장품 경우에는 지금 유해물질이나 부작용 발생을 하면 그 포장지나 용기에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일회용 생리대의 경우에는 장시간 피부 점막에 부착돼 있기 때문에 화장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일회용 생리대도 화장품과 같이 부작용 표시 의무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도입하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것은 좀 더 안전성에 관한 여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전현희 위원**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화장품은 지금 실시하고 있으니까 더 위해 가능성이 높은 생리대에도 이런 부작용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데 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식약처가 여성 생리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또 관리 그리고 또 유해 정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명심하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신동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시간이 짧아서, 정은경 장관님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문제는 분명하게 잘못됐다면 그 부분의 잘못 자체는 인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국가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차적으로라도 급박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의료사고 관련된 법안도 보면 제가 사실 공부를 좀 한 사람이거든요, 그 부분에. 철저하게 의사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아주 핵심적인, 이를테면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의 완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들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봤자 결국은 의사들만 면책시켜 주는 것이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핵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 공산국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국립의료…… 의대를 만들어서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의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일본의 자치의대가 유사합니다.

○**신동욱 위원**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남도의 서남대 해체되고 난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의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좋습니다. 전라남도든 제주도든 지역의료가 붕괴될 상황이면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이빨 땀 질하듯이 국립의대를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 하나 만들어서 나라에서 보조해 가지고 학생들 양성해 가지고 15년 동안 복무하게 한다고 합시다. 이게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조목조목 다 말씀드리기가 어색할 정도로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도 국립의대 만들어서 국가에서 학비 대 주고 15년 동안 서울에서 근무하는 학생들 모집하는 국립의대 만드실 겁니까? 부산에도 그렇게 만드실 겁니까?

이것은 국가 의료 체계에 대한 본질적 고민,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료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료 불평등의 기본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만드셔

야지 특정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것 해 달라고 막 그런다고 해 가지고 이것 자꾸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큰 재앙이 될 겁니다, 저는.

이미 우리가 의전원 제도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것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나중에 감당 못 합니다. 이것 이 사람들 15년 동안 못 묶어 놓습니다. 그냥 지역에 의대 허가하세요, 그냥 필요하다고 하는 데 있으면. 그게 맞는 거지 이것 정말 우스꽝스러운 법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백신 관련해서는 식약처의 매뉴얼상 통보나 조사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를 면책시켜 주기 위한 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의사만이 아니라 환자들이 중증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보장하기 위한 그런 법의 목적이 더 강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 위원 그 부분은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리고 환자단체, 특히 중증질환연합회나 이런 환자단체에서도 환영하고 있는 그런 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료사고 당하신 분들이 답답해하는 문제의 본질은 도무지 의료기록에 접근도 할 수 없고..... 설명의무 같은 것 해놓으셨는데 당연히 설명해야지요. 그런데 의사들이 안 하기 때문에 법으로까지 만드신 거잖아요.

본질의 문제는 꼭 중증질환자들의 치료 거부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료사고 당하신 분들이 도무지 법원에 가서 이길 수 없는 이 구조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의사단체에서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을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쪽 담아서 뭔가 개선된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법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조금 마지막 답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입증책임 완화에 대해서도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겠다는, 그런 제도가 들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립의대 관련해서는 서남의대가 전남이 아니라 전북 지역에 있던 의대여서, 지역 민원으로 전북에다가 이걸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국립의대는 전국 단위로 만드는 거고 중앙과 지역 캠퍼스를 둘 예정이기는 하지만 이게 특정 지역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절대 아니고, 현재 저희가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의사 확보가 어렵습니다. 재활·감염병·소방·정신, 여러 영역에서 의사 확보가 어렵고 또 이런 공공의료 정책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실패했던 의전원 제도하고는 좀 제도가 다르고 전국에 하나 정도를 유
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대 성격이지……

○**신동욱 위원** 그것 전국에 하나, 전북에 두실 건 아니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중앙하고 지역 캠퍼스를 두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앙에 일
단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실습병원, 의대에 대한 신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이……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지방이 다 소멸해 가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영교 위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아름다운 전남에는 의대가 없고 또 그 왜 멋
진 전북에는 의대가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전북에는 2개 의대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전남에 없어요. 전남에 의대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전남에는 의대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전남에 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도 그때 과제였는
데요. 저는 골고루 잘 공공의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백신 관련해서 곰팡이·머리카락 이런 백신이 몇 개
나 있었던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곰팡이가 확인된 것은 1개였고요. 머리카락이 확인된 것은 2
개의 바이알 약병이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지요. 곰팡이가 확인된 건 하나, 머리카
락은 2개, 그러나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영교 위원**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1420만 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의심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하고. 곰팡이 하나, 머리카락 2개, 그렇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 1200개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1200개 중에 한 600여 개는 주사바늘을 넣어서 희석시키거나
주사액을 뽑을 때 고무패킹에 있는 조각이 떨어져 들어가서 생긴 경우가 많았고요. 또
하나는 백신이 단백질 성분이다 보니 단백질이 뭉쳐서 이물질처럼 보였던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고 또 유리병 안을 코팅하는 이산화규소라는 성분이 검출된 그런 경우들이 다수
였습니다.

○**서영교 위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그러나 오해가 생기게 1426
만 회 이야기하면서 그게 전체가 곰팡이나 머리카락처럼 이야기되지 않게 명확하게 하시
고요. 곰팡이는 하나, 머리카락은 둘.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저도 백신을 맞았지만 우리는 괜찮았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 달라. 우리에게 억울하다고 하는 분
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더 계속 나오지 않게 귀를 기
울이고 해결도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영교 위원 두 번째,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갔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너무 밝게 잘 자라요. 그런데 환경이 좋지를 않아요. 지역아동센터 환경 예산을 아예 삭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가요.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족 같은 아이들과 또 일반 아이들도 같이 가게 됩니다.

○서영교 위원 요즘은 일반 아이들이 5 대 5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 정도 됩니다.

○서영교 위원 일반 아이들은 거기를 왜 갈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방과후 돌봄이 필요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방과후 돌봄으로도 좋고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고, 우리 지역에서는 오케스트라도 하고 애들이 케이팝도 하고 같이 필요한 공부도 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 환경이 엉망이에요. 거기는 집보다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의 예산처럼 환경을, 책상도 좋고……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아이들도 다 가서 학원보다는 거기서 행복하게 지내게, 같이 공동체 하면서 지내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후원을 따서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왜 책상이 이렇게요?’라고 했더니 환경개선비가 완전히 삭감되었더라고요. 제가 차관하고도 통화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환경개선비를 본예산에 넣게 해 주시고요. 그거 아니어도 전국에 있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예비로 남는 예산이든 뭐든…… 아이들이 있는 그 지역아동센터 이름부터 바꿔 주세요. 이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지역아동센터를, 그 좋은 곳을…… 이름부터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비 주시고요. 그래서 집보다는 좋게 해 주시고요. 아니, ‘거기서 놀면 너무 행복해’라고 하는 느낌을 공동의 돌봄으로 해 주신다면 굳이 돌봄을 따로 찾을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은 아마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편성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단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우리 어릴 때 단복 입은 애가 제일 부러웠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단복을 돈 주고 빌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독지가, 사회복지공동기금회가 예산을 보내서 이 아이들이 단복을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름부터 좀 바꿔서 그곳이 행복하고 오히려 고급스럽고 이런 곳으로 한다면 훨씬 더 행복한 아이들의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대안을 좀 보고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의료분쟁 조정법, 106항이지요. 제가 지난 주말에, 며칠 전에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를 갔더니 그분들이 아주 엄청 격앙이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의료 정책을 어떻게 하길래 이분들이 왜…… 자기 의료진들이 잠재적인 범죄집단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필수 의료, 지방의료가 이래서 살겠느냐. 심지어 지금 우리 의료진들이 대거 한국 탈출 러시가 있답니다.

지금 우리 의료체계가 굉장히 붕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 정말 정책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점검해서 이런 의료계의 걱정, 정말 비탄에 빠진 그분들의 걱정 없애고 필수의료하고 지방의료가 살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도록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이번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자세히 읽어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요약 보고서……

○송석준 위원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책임을 느낍니다.

○송석준 위원 느끼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송석준 위원 그러면 책임질 행동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석준 위원 본인이 당시에 코로나 대응의 영웅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잘한 거로 지금 알려져 있고 본인도 그렇게 해서 우쭐했었잖아요, 한때. 솔직히 그럴 자격이 있었나요?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게 엉터리였잖아요. 지금 백신 문제가 심각하게 나왔지만 그것 뿐 아니라 대응 체계, 방역 대응, 의료 대응, 사회 대응, 5개 분야 해 갖고 온통, 이 체계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가 이렇게 엉터리 대응을 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그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책임지겠다 그런 입장을, 본인의 거취를 비롯해서 확실히 책임지는 입장을 한번 밝혀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처음 경험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체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 또 미흡한 부분들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겸허하게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책임만 느끼지 마시고 행동으로 그 느낀 책임을 이행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상.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전주출신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입안하시고 통과시키시기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남원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전남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지역을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중앙 캠퍼스하고 또 지역 의료 실습이나 훈련을 위해서 지방 캠퍼스, 두 가지 캠퍼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전북 남원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 주체로서 권리를 누리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라든가 국제 인권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장애인의 참정권, 자기결정권,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보장한 것 매우 고무적입니다.

장관님, 그런데 탈시설 기조에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기암 진단을 받은 간암에 걸린 아버지가 64세인데 27살 먹은 자폐아 아들에 대해서 시설을 못 구해 가지고 1년째 지금 뽕뽕이를 들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이 법안도 좋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에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설 없이는 온전히 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분들이 장애인 학대 발생하면 꼭 시설을 지목하고 시설을 근절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관님, 이 자리에서 한번 약속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탈시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탈시설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탈시설화 나오는데 이 말이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결코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탈시설화라는 거는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거지 시설을 없애거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성윤 위원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거주시설에 대해서 좀 더 소규모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잘 챙겨 주세요.

의료분쟁 조정법, 이재명 대통령께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사법 리스크, 형사처벌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을 보시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 법안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예.

○이성윤 위원 저는 이 법이 이재명 정부의 의료 정상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안을 보고 느낀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2조의2 관련해서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반의사불벌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성윤 위원 그런데 중과실 의료 행위 개념이 약간 불명한 경우가 있더라. 예를 들면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체·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의료 행위 이게 약간 애매한 것 같고.

그다음에 5조의2항 관련해서 설명의무 미이행 기간을 7일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7일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좀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예를 들어 부검한다고 하면 제가 경험으로 봐서도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제 의견으로 한 달 정도 주면 어떨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중과실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대법원의 형사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서 열두 가지로 일단 유형화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하고 유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한번 판단을 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또 개별 심의로 판단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성윤 위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면책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거기서 중과실이나 아니냐를 판단하고 또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나 이 두 가지를 판단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의무를 안 했거나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 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중과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전 법보다는 명확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의무에 대한 기한은 저희가 7일로 정했는데 이거는 발생하고 7일이 아니라 의료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7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환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신속하게 이 사고의 경위나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설명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7일로 일단 정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최혁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복지부장관님, 일부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탈시설화가 명문화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동안 장애인이 길에 안 보이다가 언젠가부터 장애인분들이 길에서 보이기 시작했지요, 차별 철폐 운동한다, 탈시설 운동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애인분들이 사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상버스가 도입된다라든가 공공부문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온다라든가. 그래서 어찌 보면 장애인분들의 삶도 개선됐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삶이 변화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최혁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탈시설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지 간에 장애인들이 사회 안에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든다는 거 하나, 또 하나 기존의 시설에 대한 불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좀 지원을 하고 유인을 해서 기존 시설도 개방형으로 운영이 돼서 사실상 시설이지만 사회와 연결돼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복지부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복지부가 통합 돌봄도 그렇고 너무 혼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의 정책 수단들을 좀 연결해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좀 풀어 갔으면 좋겠다, 국토부의 사회주택이라든가 농림부의 치유농업이라든가 산업부의 AI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탈시설이 효과적으로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복지부가 좀 그렇게 폭넓은 역할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는데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불만들이 민간에 있냐면 복지부가 건보공단을 통해서 민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심지어는 조사권을 남용하기까지 하는데 공공부문의 비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이게 거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에요.

오전에 제가…… 오전이 아니라 아까 보훈부장관께도 말씀드렸는데 보훈부 산하 보건복지의료공단의 보훈요양원 사건 아실 거예요. 6개 요양원이 조직적으로 부정수급을 했어요. 그래서 건보공단이 환수금을 18억 원을 했고요. 지금 과징금이 대략 87억 정도가 부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발을 안 해요. 그런데 민간은 어떻게 했느냐? 민간 요양기관 열네 곳 같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하고 환수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아주 단호한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공공부문에서는 거의 100억대 가까운 이런 손실이 발생했는데 보훈부도 조치를 안 하고.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시면 국민이 손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시 그 돈을 국민 돈으로 메워야 되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 건보공단에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가 고발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 초기 대응에 좀 문제가 있었고, 점검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 전례가 없다, 여력과 인력이 없다. 이걸 말이 안 된다, 민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려 나가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라면 대신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한다면 공공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보건복지부가 막아서 못 하고 있다는 건보공단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 아닐까 바랍니다.

장관님,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고요. 엄중한 조치를…… 왜냐하면 공공부문은 고용도 안정화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책임이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나경원 위원님 1분 추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탈시설화를 이 법안에 넣으셨는데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탈시설이라는 이 용어는 이념적인 용어라는 걸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 단체가 딱 두 쪽으로 나뉘어서 장애인차별연대를 비롯한 데는 탈시설을 주장하고 결국 탈시설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먹이사슬을 그쪽에서 다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들 나와서 일종의 시위하고 하는 것도 일자리사업으로 다 돈 주고, 돈 주고 나서 일자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데모하게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시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종의 공동주택 같은 것도 시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자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 형태가 있는데 이것 꼭 이념적인 용어인 탈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진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인 권리보장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넣어 주는 게 맞지. 이걸 굉장히 이념경도된 법안이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그동안 탈시설을 주장해 왔던 장애인차별연대를 비롯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먹이사슬 만드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이거 그냥 수수방관하고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저희가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문제나 열악한 처우 개선 같은 시설에 대한 선진화 또 시설이 좀 더 소규모화되고 좀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선택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할 수 있게 양쪽을 다 균형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용어를 ‘시설 선진화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탈시설이라는 말을 쓰는 건 저는 굉장히 이념적이고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시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설 선진화와 자립 지원’ 이렇게 용어를 바꿉시다.

○**신동욱 위원** 일반인이 알아듣기도 어려워요, 탈시설이.

○**나경원 위원** 왜 이념적인 용어를 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마무리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이 장애인 문제가 굉장히 문제인 게 이것이 이념적으로 자꾸 이렇게 대립된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시설 선진화와 자립 지원’ 이렇게 좀 고치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나경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충분히……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충분히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했는데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지금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시설 선진화’ 얼마나 좋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나경원 위원** 여기서 맨날 별거 다 바꾸면서 이거 왜 안 바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19조에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제19조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탈시설화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탈시설화’라는 말만 빼면 되겠구먼, 그러면. 굳이 사족을 달았네.

○**나경원 위원** 탈시설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립생활 지원을 받을 사람들은 시설에 있던 애들이 자립생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설에 없던 애들을 이제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 왜 탈시설화가 들어갑니까? 부모와 같이 사는 애들을 이제 독립하기 위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념적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혁진 위원** 탈시설도 보편 용어가 됐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이거 바꿔 주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장애인 단체가 데모하고 그다음에 지원받고 그러지. 예산이 얼마나 뒤로 새는지 몰라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제안 해 주신 것으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송석준 위원** 잠깐 보류했다가 명칭 바뀌서 다음에 처리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고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나경원 위원 아니, 두 단어만 바꾸면 돼요.

○송석준 위원 이거 한 번만 더 보류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이것은 해당 상임위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지 저희가 체계·자구로 바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한 번만 더 보류하고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답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상임위에서도 저희 최보운 위원님이나 김예지 위원님도 동의 해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91항, 94항, 98항, 101항, 103항 및 10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저희가 토론 종결했는데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장애인권리보장법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하고 내용이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년의 시행 기간을 갖고 있어서 그 안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결로 저희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립의전원 관련된 법에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재경부와 이미 협의돼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확정을 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확인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제91항, 94항, 98항, 101항, 103항 및 10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규택 위원 97항, 107항은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97항과 107항, 지금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7항부터 90항까지, 92항, 93항, 95항부터 97항까지, 99항, 100항, 104항부터 108항까지, 110항 및 1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규택 위원 이의 있습니다. 97항, 107항은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97항과 107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97항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맞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잠시만요. 97항……

○나경원 위원 106항.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97항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이 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거고, 방금 106항을 말씀하셨지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시고, 107항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에 대해서도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 것이지요?

○곽규택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이 3개의 법률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다음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2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 위원 이의가 있으면 표결 처리하면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는 의사일정 제97항, 106항, 107항의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이의가 없는 나머지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부터 90항까지, 92항, 93항, 95항, 96항, 99항, 100항, 104항, 105항, 108항, 110항 및 1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의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7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지금 97항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입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106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107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은경 장관님, 오유경 처장님, 임승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1)

1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4)

11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0)

1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0)

11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0)

1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7)

11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7)

119.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2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2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23.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9시4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으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2항부터 제123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112항부터 제123항까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12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9항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준비대행업 등으로 규정하고 결혼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 방법, 제공 횟수 등을 표시하는 한편 해당 사항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심사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제4호는 제휴사업자를 결혼준비대행업자와의 계약 또는 제휴에 따라 소비자에게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휴는 그 법적 효과나 당사자 간 구속력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안 제15조는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도 해당 업자가 제휴사업자 선정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제휴사업자와 직접 계약하도록 안내하며 그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대행업자, 제휴사업자, 소비자 간의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둘째, 안 제8조제2항은 민사집행법상 경매 등으로 결혼서비스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수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와 해당 시설을 매수한 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18조는 소비자가 재난 상황으로 인해 결혼서비스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결혼서비스업자가 위약금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등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까지 위약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에서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기준을 불이행 횟수가 아니라 이행양육비의 평균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소득자까지 양육비 선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3항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은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수련시설, 복지시설, 청소년보호·재활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청소년 육성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

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마련한 보수지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청소년 지도자가 시설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함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지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분보장 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추가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에 따른 청소년지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 종사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수지침을 준수할 노력 의무의 부여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의 소속에 따라 보수나 처우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113항, 115항, 116항, 118항 등 5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17항, 120항, 122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119항, 방금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한두 가지 수정이 아니라 상당 부분 수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아무래도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저희가 고려해서 제정안 취지를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완성도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러면 계류했다가 협의해서 완성시키고 통과를 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분만 물어볼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우리는 ‘양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이 맞다 했는데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을 고집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러면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는 여성·남성 말고 제3의 성을 인정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서영교 위원 그런 게 아니지.

○나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가 양성평등가족부가 맞다 했는데 끝까지 성평등가족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평등가족부의 의미를 우리는 묻고 싶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위원님, 성평등이라 함은 기존의 양성평등이 갖고 있는 어떤 남녀 간의 대결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경원 위원 그러면 남성·여성 말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저희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장관이신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이성윤 위원 나중에 말씀드릴다잖아요.

○서영교 위원 성평등이라는데 뭘.....

○송석준 위원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나경원 위원 종교계에서 우려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종교계가 뭘 우려해요, 우려를 하는 게.

○나경원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계속 피하고 계시잖아요.

○이성윤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성평등인데 ‘다른 성은 인정하지 않느냐’ 이러니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지.

○나경원 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위원님들 왜 그러세요?

○이성윤 위원 배배 낀 질문이잖아요.

○서영교 위원 배배 낀 질문이지요.

○곽규택 위원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장관이 그 정도도 대답 못 합니까?

○이성윤 위원 왜 질문을 꼬아서 하세요?

○서영교 위원 왜 그래?

○나경원 위원 아니, 왜 그러십니까? 장관이라면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지요.

○박지원 위원 아니, 1분 한다고 했잖아!

○이성윤 위원 1분 넘었어요.

○곽규택 위원 1분 했어요.

○송석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밝혀 줘야지요.

○나경원 위원 명확한 입장을 해야지요. 명확한 입장을 말을 해야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충분히 답변하신 것으로 보여서 이 정도로 마치고 기회 되면 또 질의하십시오.

○나경원 위원 아니, 왜 대답을 못 하게 합니까?

○서영교 위원 내가 지었어요, 최고위원 할 때.

○박지원 위원 장관,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장관님, 더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충분히 답변하신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나경원 위원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 못 하시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렇게 이해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2항, 113항, 115항, 116항 및 1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4항, 117항 및 120항부터 123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9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민경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출생률이 1에 가까워졌어요.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대한민국 출생률이 1월 0.99, 1에 가까워졌으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곽규택 위원 빨리 가시라 그러세요, 피곤한데.

○나경원 위원 아니, 그것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지난번 정부에서부터 계속한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타 상임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유법 심사를 할 순서이기는 한데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대로 진행하시자니까.

○송석준 위원 빨리 마무리하지요, 왜.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아마 고유법 심사도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정회 없이 그냥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많지 않아요. 빨리 마무리합시다.

○곽규택 위원 국조특위에서 실컷 하세요. 법사위에서 또 하시려고 그래. 뭐 하시려는 지 다 알아.

○송석준 위원 지금 여태 기다렸는데, 이거 금방 하잖아요.

자, 빨리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20시 20분에 속개하여 고유법 심사를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그러면 정회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정회를 하면.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러면 조금 더 할까요?

○곽규택 위원 그냥 한 20분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송석준 위원 여태까지 기다렸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아니, 20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왜 안 돼요, 3분씩 하면 7명이나 할 수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아닙니다. 5분 발언, 5분 토론이시고요.

○신동욱 위원 뭘 또 갑자기 5분이야.

○곽규택 위원 왜 갑자기 5분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원래 고유법 항상 5분씩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국민의힘 위원님 몇 분 발언하실 거예요?

○나경원 위원 우리 다 해야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러니까 다 하실 거잖아요.

(장내 소란)

○나경원 위원 민주당 하지 마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민주당도 다 하실 거라서 지금 불가피합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도 식사를 하셔야 돼요.

○송석준 위원 빨리 마무리합시다. 여태 기다렸는데 지금 이렇게 어설픔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

○나경원 위원 아니, 30분이면 밥도 못 먹잖아요.

○곽규택 위원 밥도 못 먹어, 그러면.

○김기표 위원 1시간 해요. 그러면 1시간 쉬어요.

○송석준 위원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2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에 속개해서 고유법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회의중지)

(2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1)

12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2)

1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2)

1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2)

1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6)

1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3)

1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의사일정 제124항부터 제130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기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기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기표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 중 혼인 요건을 강화하여 혼인의 진정성은 확보하되 거주 요건을 제외하여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예우하고 현행 국적취득 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간이귀화 요건 중 혼인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최소한의 거주 기간을 3개월로 부여하고,

둘째, 후손 세대를 구분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간이귀화 허가에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셋째,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등을 거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자에 간이귀화한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3조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조문 정비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아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병훈·김남희·남인순·용혜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잠정조치의 미청구·미신청을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조사 및 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 사건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미이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처장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법무부장관님, 박상용 검사 보도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그 주장한 서민석—전 부장판사—변호사하고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박상용 검사를 향해서 통화한 내용을 밝혔고,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간단한 수사라든가 경과들은 제가 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게 박상용 검사와 그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녹취록입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즉 이화영 부지사를 지칭하는 겁니다—이 중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다 해낼 수 있고요.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결정된다’ 이게 박상용 검사의 말이에요. 이 말을 짜깁기했다는데 이 말 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이재명 씨를 주범으로 하고 불어라, 그래야 당신이 중범이 되고 이렇게 해서 풀린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취지로……

○박지원 위원 그런 취지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지원 위원 그런데 박상용 검사가 짜깁기했다 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AI도 아니고 성우가 한 게 아니에요. 박상용 검사의 자기 음성이에요. 이 말 자체가 검사로서 일탈된 그런 말, 내용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특검 수사나 저희 인권침해 TF에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서민석 전 부장판사가 오늘도 유튜브에 나갔지만 내일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연한 사실을 검찰에서는 잘 파악해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씨를 포함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서민석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서울고검에 설치된 인권침해

TF에서도 한번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는 오늘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었고요, 당시 일부 전문에 해당하는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의 일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 저희들이 인권침해 TF에서도 또 서민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조사를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관련된 사건들이 전부 2차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를 완전히 주범이 되게 해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야 중범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보석을 하건 추가 영장 청구할 때 조치가 된다 이것은 엄연히 회유예요.

그래서 잘 파악해서 검찰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른바 얘기하는 연어회 파티 관련해서 감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것 아직도 진행 중일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이고, 그냥 저희 같은 비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교도소에서 호송 온 교도관들 그리고 시간 타임라인 확인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아시는 바대로 쌍방울과 관련돼 있던 것, 방용철이라든가 안부수라든가 또 박상용 관련된 구속영장을 저희들이 청구했었는데 기각됐습니다. 기각되고, 또 박상용 검사도 저희들이 세 차례 조사를 했지만 2차 조사부터는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실질적인 진척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고검 TF의 인사이동 때문에 좀 변동이 있는 바람에 진척이 조금 더딘데 저희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면 저는 진작에 결론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아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주장한 녹취록이라는 것을 보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긴 분량이라고 들었고 변호사하고 검사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서민석 변호사 그분이 이번에 청주시장 나갑니까?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전혀 녹취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딱 그 부분 ‘그러면 이재명이—그 당시에는 대통령 아니었고—주범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만 딱 놓고 보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박상용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을 오히려 중범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계속 그쪽 변호인 쪽에…… 그런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상상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러려면 주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범이 누구겠냐, 앞뒤 구조로 보면. 그러면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면 당신이 중범 될 수도 있지’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 앞뒤 맥락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는 그 녹취록이 지금까지 아무런, 작년 국정감사 때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박상용 검사, 엄희준 검사를 가지고 다투았을 땐데도 그 당시에 아무 얘기 없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 녹취가 나왔고, 그 녹취를 내놓은 분이라는 게 이번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고 또 녹취의 전문이 나온 것이 아니고 녹취도 상당히 편집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주장을 하면 전형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정조사가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어떤 작전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아니고 조작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국정조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관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갑자기,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녹취가 그것도 이번 선거에 민주당 공천받으시고자 하는 분한테서 툭 튀어나와요? 그게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감찰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아직도 진상 규명이 안 된 것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몰려고 했다? 납득이 됩니까, 혹시?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면 서민석 변호사도 상당 법조 경력이 있는 분인데 녹취를 특정 부분만을 도출해 가지고 주장을 해 가지고 어쨌든 나중에 그것만 갖고 녹취록 전체의 완결성이라든가 또는 진술성이라든가 또는 증명력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지금까지 그 부분을 전혀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다만 어쨌든 특검의 수사든지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만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믿어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신동욱 위원** 아니요, 저는 어제 그 보도는 사전 여론 조성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미 규정을 했잖아요. 이런 식의 조작기소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국정조사가 필요해서 앞으로 국정조사 해서 조작기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민주당이 국정조사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녹취록을 가지고 여론 조성을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게 바로 조작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어느 쪽이든 이게 국정조사 과정이나 특검 또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전체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분만 가지고는 진실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잘 밝혀지도록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장관님, 오히려 지금 박상용 검사를 위증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나와서 거짓말을 했던 게 지금 뻔히 다 드러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

구하고 뻔뻔하게 SNS에다가 글 올리면서 정치권이랑 싸우고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현직 검사가. 어떻게 이것을 그냥 둥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박상용 검사 관련해서도요 서민석 변호사가 고소한 것도 있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께서 고발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좀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도 하겠지만 지난번 탄핵 조사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종합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은 취할 계획이기는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현직 공무원이 공무원답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너무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강을 잡아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도 박상용 검사 발언이라든가 또는 인터뷰 관련해서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감사윤리강령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이 허가제였는데 신고제로 바뀌면서 그래서 사실 적절하게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찰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영상 준비되나요?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박상용, 나쁜 사람이에요. 박상용, 범죄자예요. 박상용은 조작수사의 주범이에요. 박상용은 총체적인 범죄자예요. 박상용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 혼자 했겠어요? 위에 다 보고했어요’라고 자기가 자기 유튜브인지 어디에 나와서 다 말했어요. 스스로 나왔어. 박상용 혼자가 아니라 위에다 다 보고하고 했다.

박상용 위는 누구입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 위는 누구입니까? 대통령 윤석열. 야당 당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사람을,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총체적으로 설계를 했고 그 우두머리는 윤석열, 그 중간 우두머리는 한동훈 그리고 그 밑에 박상용과 그 검사들입니다.

이 박상용에 관한 이야기는 그동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원구치소도 다녀왔고요. 설마 했는데 연어가 드러났고요. 설마 했는데 소주가 나왔어요. 설마 했는데 교도관들이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설마 했는데 그 공범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박상용이 이 자리에 와서 위증을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이 묻습니다. ‘연어·술 파티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라고 답했고 ‘종이컵에 소주 넣어 먹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성태 와서 수발을 들었느냐?’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외부 도시락 들어왔냐?’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김성태 관련자들이 아무도 안 들어왔느냐?’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말을 바꾸면서 ‘수사에 필요할 때……’라고 흐려요. 이 내용은 영상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가 말한 위증, 위증은 처벌 대상이고

요.

말씀처럼 공무원이 정치질하고 있습니다. 폐북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그것은 정치중립 위반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정치질을 하고 있는 정치중립 위반을 처벌해야 하고요. 가장 무서웠던,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었어요. 위의 지시를 받아서 이재명을 사냥하고 이화영을 사냥하고 쌍방울을 사냥하고……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박상용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변호사비 대납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갔더니 이재명 변호사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옆에 있는 변호사 컴퓨터에 대북송금 삭제돼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추적하다 보니 쌍방울이 나왔고 그것을 추적하다 쌍방울에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유튜브에서 발언을 해요. 다른 것 수사하다가, 가서 별건으로 거기로 들어갔다가, 자기가 변명하고 만들어 놓으려고 하다가 자기 말을 자기가 올라미로 동여매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박상용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영상자료 상영)

여기서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 것밖에는 없는 상태잖아요’, 증거는 이화영 것밖에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다음 눌러 주세요.

여기서 끝내 주시고요.

자기가 뭘 못 하게 합니까, 영장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이재명을 잡으려고 저들이 저렇게 수사를 조작했다라고 나왔는데 그동안 아니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위원님, 추가시간 필요하십니까?

○서영교 위원 예, 1분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1분 더 드리세요.

○서영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목소리를 틀어 주세요, 이것.

○신동욱 위원 뭘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구먼. 그만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서영교 위원 이것 한 번 더 틀어 보세요.

여기 딱 멈춰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겠으면 보세요. 목소리가 내 목소리예요, 저게? AI예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딱 걸렸어요, 국민의힘도. 박상용이 딱 걸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녹취를 다 까라? 박상용 너무 뻔뻔스럽지 않아요? 저렇게 딱 걸렸으면 바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딱 걸렸으면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데 다 까라? 어디서 반박을 합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공무원이 잘못을 했고 저질렀고 증거가 나왔으면 그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내부에서 감찰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위증으로 법적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가, 공무원이 저따위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탄핵조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특검의 수사 범위이기 때문에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저희들도 그동안 다각도로 많은 준비를 해 왔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연어·술 파티부터 시작해서 박상용 검사를 얼마나 오래 조사했습니까. 법무부에서 먼저 조사했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다음 지금은 서울고검에서 조사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서울고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진실을 못 밝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들은……

○**나경원 위원** 그것은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조사가 돼 있고요.

○**나경원 위원** 상당 정도가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 청주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간 청주시장 예비후보 서민석 변호사, 법무부나 고검에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서민석 변호사를 한 번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조사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것 그때 안 나왔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본인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서민석 변호사를 조사했다는데 왜 그때는 얘기 안 하다가 똑 잘라 가지고, 통화를 수십 통 했다는 얘기인데 그중에서도 한 통화의 전체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짜깁기라 그러는 거예요. 앞뒤 똑 잘라 가지고 일부분만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은 다 공개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내용만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다 공개를 해야지 신빙성이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새 봐 봐요. 서울고검에서 흘렸는지 법무부에서 흘렸는지 녹취록이라고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김성태·이화영 녹취록 중에서 김성태 녹취록 부분만 돌아다니지요, 1600쪽 중에서 900쪽. 그것은 누가 흘린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 법무부에서 공개한 사실은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이화영 건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900쪽만 돌아다니면서 온갖 의혹을 만들어요. 거기서 김성태 진술은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진술로 알려지는데 그것을 여기다 교묘하게 붙여서 대북송금 이것을 말하는데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이 뭐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직인 찍힌 공문 2장 들고 다니면서 중국 가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7월에 방문할 테니까 그리고 쌀 10만t인가 얼마 보낼 테니까 하면서 다닌 것 아닙니까. 왜 증거가 없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관련해서는 이미 국정원에서 그 당시 방용철이나 안부수 관련해서 조사했던 내부 보고서들이 지금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위원 국정원 조사 보고서도 거기서 이재명 그 당시 지사의 방북비용에 관련된 것이라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른 조사들도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화영 부지사가 이미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판결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렇지요? 확정판결 받았는데 이것이 조작이다 그러면 왜 이화영 부지사는 재심 청구 안 합니까? 가장 깔끔한 것 아니에요? 증거가 조작되었으면……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이게 그 진술이라든가 또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져야 재심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나경원 위원 아니, 증거가 조작되었고 지금 김성태의 녹취록 900쪽이 어찌느니 또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이 어찌느니 그러면 재심 청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어쨌든 특검이나 수사에 의해서 최종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박상용 검사를 조사하네 마네 하면서 결론을 못 내립니까? 그것은 조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부분이 조작됐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어쨌든 특검이나 인권침해 TF도 확대해 가지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조작되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장관께서 예단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자꾸 예단을 얘기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제 예단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답정너, 조작이라는 것 나올 때까지 이렇게 괴롭힐 겁니까? 아무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이고 어찌고저찌고 해도 본인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데 그러면 가서 애

기 안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이 조작기소특위가 뭐예요. 공소취소 모임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번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공소취소 하려고 이 공소취소 모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소취소 하려니까 대북송금은 확정판결 됐으니까 이것 조작기소로밖에 몰 수 없으니 여기에다가 온 힘을 쓰는 것 아닙니까? 연어회·술 파티요? 1만 3000원짜리 연어회덮밥, 그런데 소주 4병을 페트병에다 옮겨 담고 26분 안에 가야 된다는데, 아까 서영교 위원님,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수원에 가서 현장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주범·종범이면 한번 다 불러 보세요. 진짜 해도 너무하고 갈 데까지 갔어요. 이런 식으로 사건을 뒤집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객관적 진실이 조만간 드러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무슨 객관적 진실입니까? 정성호 장관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잘못하면 법왜곡죄 문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보기에선 검사들이 이것 공소취소 못 합니다. 왜냐? 나중에 법적책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1분 더 주세요, 서영교 위원도 1분 더 주셨으니까.

자, 이것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니까 검사들이 절대 공소취소 못 해요. 공소취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해야 돼요. 법무부장관도 못 해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공소취소 절대 못 합니다. 아마 특검 가지고 가서 할 겁니다, 특검 가지고 가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지 저희가 공소취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경원 위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정성호 장관님,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나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일입니다.

○**나경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최혁진 위원이 나를…… 우리 남편은 대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기본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김혜경 여사 고등법원 판결 언제 났지요? 작년에 났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나경원 위원** 법인카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건으로 유죄받은 것 작년 2025년에 나왔는데 여태까지 왜 판결 안 합니까? 2025년 5월이에요, 5월. 5월에 벌금 150만 원 받았는데 왜 대법원에서 이것 판결 안 합니까? 지금 1년이 다 돼 가요. 빨리 판결하세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것 확정됐는데.

○나경원 위원 확정이 됐다고요? 상고했잖아요.

○박은정 위원 상고 포기하는 것 확정됐는데.

○나경원 위원 상고했다고 들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나경원 위원 재판도 정지하고 법원이 알아서 듣잖아요, 알아서.

.....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 마무리하신 것이지요?

장관님, 형사소송법 420조 채심 사유를 보면 7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렇지요. 확정판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확정판결에 의해서 조작이 확인되어야 채심 청구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맞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러니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채심 청구를 왜 하지 못하냐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때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아마 그 녹취록에 화들짝 놀라신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방어하시는 게 곧 조만간 아주 부끄러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님, 아까 추가 1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서민석 부장판사하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청주시장후보로 등록돼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가서 출판기념회 할 때도 다녀왔고 했는데 서민석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변호했어요. 하다가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지요. 그런데 민주당 청주시장후보로 원하니까 그게 우리 당에서 문제가 됐어요. 혹시 회유를 당한 것 아닌가 했는데 그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자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녹취록을 발견하고 저한테 가져오겠다고 해서 제가 지방에 가니까 당에 제출해 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가 민주당 청주시장후보 공천 신청을 하니까 이화영 변론을 중간에 사임한 것을 의심을 했던 말이

에요. 그래서 서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도 면담하고 이화영 부지사 부인도 면담해서 그 오해를 불식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찾아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장관님, 오늘 서영교 위원도 보여 주셨지만 박상용 검사 녹취록 공개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저는 이 녹취 공개를 계기로 해서 이제 박상용 검사를 바로 기소하거나 또는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하고 또 영장이나 기소를 하다 보면 제 경험으로 보면 엄청 주저되고 주변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녹취록까지 공개될 정도면 검찰이나 또는 고검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장관님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인정되면 기소하라라고 지휘하거나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라고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에 대한 일차적인 수사는 대부분 공수처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고소·고발된 게 몇 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고발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객관적 진실이 어떤 것인지 잘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수사를 많이 해 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녹취록만 있다는 그 자체로 기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도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이성윤 위원** 이 사건이 작년 10월에 수사 지시하신 거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지금 고검에 감찰 및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 정도 감찰 인력으로 감찰도 하고 수사도 할 정도라면 지금쯤 결과가 나와야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박상용 검사의 증거를 많이 확보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민석 변호사에 관련된 녹취록은 저희들이 입수를 한 바가 없고요. 최근에 본인이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이성윤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께 서울고검의 수사 상황을 좀 파악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기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은 수사의 진척 정도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검찰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조직에서 왕따

가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검사들이 협조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수사나 감찰하는 검사는 그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서, 그 청 내에서 왕따가 돼 가지고 엄청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특검에 넘겼으면 하는데 특검 수사로 밝히려면 김건희나 윤석열의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하잖아요. 그것을 못 밝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장관님께서 공수처를 핑계달 게 아니고요 서울고검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기소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고검이나 검찰에 맡겨 두지 마시고 대검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어제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이런 회유 통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국민들이 법무부장관님 뭐 하시냐고 엄청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가지고 기소 인정되면 기소하고 구속기소 할 정도면 구속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권침해 TF에 보낸 조사도 저희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은 기소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 기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상용 검사도 저희들이 세 번 조사를 했는데 딱 한 번 외에는, 두 번 세 번은 조서 날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지금 쌍방울 관련자들도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3명 영장청구했는데 전부 기각됐습니다. 그 외에 강제수사를 나가기 위한 것들이, 어쨌든 법원의 영장을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폭넓게 보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다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수사 과정을 국민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 문제는……

○**이성윤 위원** 장관님께서 지시한 지가 어느덧 다섯 달이 넘었습니다. 여섯 달째 돼 가고 있는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검찰 안팎의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성윤 위원** 이 정도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수사를 했으면 지금쯤 결론이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늘 녹취록이 나온 것 정도를 보면 인정돼서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녹취록이 제출된 게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녹취록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시다.

○**이성윤 위원** 장관님, 이 정도 수사되면 기소하거나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절차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장관님, 살펴보셔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또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법원행정처장직무대행님, 최근의 제주지방법원 판사 언론보도 난 것 보셨어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제주지방법원 판사……

○박은정 위원 못 보셨습니까, 심각한 일이 발생했는데?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판결문 송달을 안 해 가지고 6개월 넘게 판결문 송달 안 한 사건도 있고……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제주지법 해당 판사에 대해서 제주지법 근무기간 중에 판결문 송달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확인했더니 606건 중에서 30일 이상 송달 지연 있었던 사건이, 판결 지연 사례가 64건이나, 10%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사자는 판결문을 못 받으면 이게 어떤 절차도 진행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강제집행도 못 하고 항소도 못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맞는 말씀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6개월 이상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법원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2주 이내에 송달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박은정 위원 그런데 이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 하면 구두 경고하셨더라고요, 구두경고. 구두경고해 가지고 이 판사가 그 후에 시정이 됐는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판사에 대해서 징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말씀 듣고 보니 심각합니다. 그런데 윤리감사관실은 행정처와 별도의 조직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조직인데 그 이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아니,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시라는 건 아닌데 이런 판사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법원은 판결문을 2주 이상 이렇게, 한 달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비일비재한가 봐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두 경고로 끝내고 또 해도 상관없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비일비재하지는 않고 아주 드문 일이긴 한데요.

○박은정 위원 아니, 드문 일이면 이 판사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은정 위원 조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장관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감당을 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입니다.

○박은정 위원 장관님께서 보고받으시는데 그 보고가 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늘 의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장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지금 언론에 난 저 해당 검사의 워딩 저것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인정하시지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저게 2022년 5월, 6월 이때의 상황이면 징계시효 얼마 안 남았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 일단 연어·술 파티라고 알려진 그 건만 해도 5월 17일인가가 어쨌든 시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문제 되지 않게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대검의 감찰 착수 승인,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착수 승인이 났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연되고는 있지만 지금 감찰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감찰하고 있는데 감찰 개시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에 보고를 하면 대검 감찰부장이 착수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확인하셨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감찰로 승인 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 감찰부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검 검찰총장대행을 감찰부에 터치를 못 해요. 감찰부는 독립되어 있거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 감찰부장이 저 검사 감찰 착수 승인도 안 해 주잖아요. 박성재 장관이 알박기 한 인사거든요.

장관님,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도 지금……

○**박은정 위원** 장관님, 그런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규정 5조의2 3호 가목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의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대검 감찰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검찰총장대행을 아무리 잡도리해도 대검 감찰부장이 그렇게 하는 한 이 감찰이 진행이 안 돼요. 감찰 착수조차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은, 저 문제의 발언이 저렇게 나왔는데도. 법무부 감찰관 왜 안 뽑으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공모 절차 진행하고……

○**박은정 위원** 공모 절차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게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서 어쨌든 절차에 의해 갖고서 최선을 다하고 빨리 해 달라고 저희들이 상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장관님께서 감찰관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임의대로 임명할 수 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박은정 위원 아니,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에서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해 가지고 올리면 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장관님께서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 그 절차 밟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1년이 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취임한 지가 아직 1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저 검사에 대해서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하든 징계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말씀하시는 바대로 지금 법무부에 감찰관이 공석이고요 그 전임 감찰담당관 실무자도 인사 교체됐기 때문에 인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고검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인원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내부 상황이니깐 좀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법무부로 갖고 와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장관님, 제가 하나만 더 체크 좀 하고 넘어갈게요.

검사징계법 7조 5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그러니까 징계 사유를 얘기합니다,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작년 6월 달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개정을 한 법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지금 감찰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그때 작년 6월, 7월, 8월 이때부터 감찰관 빨리 임명하셔야 되고 필요한 감찰은 법무부장관께서 직접 지시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무부 감찰관이 없어서 이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감찰관을, 제가 의도적으로 임명 안 할 리 있겠습니까? 그 후부터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직접 감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으니 장관님께서 이 부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일단 서울고검 인권침해 TF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어쨌든 고검 TF가 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관 임명 빨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 심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완벽한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서민적 조작 녹취록 이걸 근거로 해서 박상용 검사라는 한 검사를 갖다가 집단 린치를 지금 무자비하게 가하고 있다, 그것도 범여권 위원들이 하나가 돼서. 조금도 서로 벗어남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모처럼 법사위원장대행을 하고 계시는 김용민 위원님, 간사님께서도 아주 그냥 단호하고도 명쾌한 말씀으로 ‘박상용 처벌돼야 된다, 국회에서도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기관증인으로 곧 국정조사에 참여하실 법무부장관님도 아주 맞장구를 기가 막히게 잘 쳐 주고 계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정말 저는 지난해 소위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에 청문회를 통해서 그 당시 이재명 후보를 기소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번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대법원을 거의 발아래에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또 검찰 완전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까지도 사실상 폐지시켜 놓고 이제는 완벽하게 그동안 이재명 피고인 죄 지우기를 위한 뭔가 거대한 시나리오에 의한 어떤 뭔가 드라마가 지금 본격화되는 느낌입니다.

내일은 이제 바로 소위 조작수사, 조작기소에 관한 국정조사특위 일반증인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 저녁 이 시간에, 법안심사 하는 이 시간에 벌어지는 이 상황이 마치 앞으로 벌어질 국정조사특위의 예고편을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빈틈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정해진 타깃에 대해서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집단 린치성으로 공격이 가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정말 섬뜩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 그때 50억 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지방권력과 부패 부동산개발 세력이 야합을 해 가지고 7800억이라는 불법 이익을 남겨서 사실상 이번에 항소 포기로 그 불법 이익이, 부동산개발 이익이 이제는 부동산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관여된 모든 자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쥐도 새도 모르게 분배하겠지요. 바로 기획된 범죄, 오늘 저는……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셨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박상용 검사가 불법행위를 했으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밝히고 그 담당 변호사가 갖고 있는 증거를 제시해서 처벌받게 하면 되잖아요, 수사에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정상적인 절차 진행해서…… 우리나라 사법절차가 잘못된 것 없잖아요.

이번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도 뭐가 급하고 뭐가 이렇게 아쉬운지 너무나 정말 섬

딱할 정도로 어떤 기획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느낌에 이 밤에 제가 정말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특검도 같이 가려 그러지요. 인권침해 TF까지 가동이 돼서 그동안에 문제됐던 사람들 하나하나 조사해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얼마나 웃기는 조사특위가 되겠어요,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보니까 분명히 또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총괄 머리, 그다음에 한동훈 중간, 박상용 실행, 이왕이면 이 사람들 다 일반증인 부르지요, 일반증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불러서 제대로 한번 밝혀 보고 녹취록도 이렇게 부분만 내지 말고 완벽하게 전 풀버전을 좀 풀어서 정말 잘못됐으면 우리 다 같이 잘못된 것을 화끈하게 한번 밝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1분 더 주실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늦은 감이 있지만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제 화끈하게 이번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있는 것 증거 다 쏟아 내세요. 그리고 또 증인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냅시다, 다. 수괴든 중간범이든 집행범이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람 다 불러내서 한번 화끈하게 또 증거 있으면 다 쏟아 내고 그래서 가짜 조작이 밝혀진다면 그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심판받고 제대로 법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 줘 봅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송석준 위원 제가 무슨 답변 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굳이 여쭙보고 싶지 않아요.

대신 그러면 기우종 처장대행님, 아직은 오염이 덜 됐을 것 같아서 지금 일련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좀 아주 강력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조작기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반드시 시작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조작기소예요.

○신동욱 위원 조작기소,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박은정 위원 조작기소라고요.

○신동욱 위원 아니, 어떻게 압니까?

○박은정 위원 조작기소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국조 하기 전에……

○나경원 위원 그리고 김혜경 여사 건이……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반드시 재판 진행해 주세요. 그것 약속하고 합시다. 우리 약속하고 다 갑시다.

○서영교 위원 아니, 윤석열하고도 못 끊어 내고 박상용하고도 못 끊어 내고. 그러니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 아니, 답변을 하는 중에 잘렸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답변 다 하셨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다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누가 안 했다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우리 저 관전평.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아니, 이미 하셨어요.

○송석준 위원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못 들었어.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위원님, 다 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말할 때 안 듣고 뭐 했어.

○송석준 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서영교 위원 내가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잖아. 못 들었어?

○송석준 위원 하여튼 시끄러워서 내가……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러면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셨으면 집중해서 답변을 좀 들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다 하셨어요.

○최혁진 위원 제가 웃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잠시 주춤했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부터 해서 조작기소 관련된 건을 보면서 검은 건 검다고 말하고 흰 건 희다라고 말하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꾸 검은 걸 희다라고 말하려고 그러고 흰 걸 검은 것이라고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데, 제가 법사위에 와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조작기소를 백 번 천 번 하고도 남을 거다라고 하는 히스토리를 과거 검찰이 지금까지 다 보여 왔잖아요. 쌍방울 또 삼부토건, 누가 가 있었습니까? 친운 검사들이 전부 다 가서 계열사의 사외이사 하고 고문 하고 자문하고 다 돈 받아먹고 앉아 가지고 뒷주머니 차고 이러고 앉았기 때문에 조작기소를 수백 번도 하고 남을 집단이라고 하는 거를 만천하에 드러냈는데 송석준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다 하시면서 ‘너네 잘못했어’ 이러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빼놓고 이 건만 가지고 자꾸 비틀어서 얘기하시려고 하니까 말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PPT 하나만 잠깐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장관님께, 오늘 거의 제가 마지막 발언인 것 같은데 요즘에 또 많이 유행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하나, 장관님 혹시 저 ‘누칼협’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죄송하지만 과문해 갖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저게 ‘누가 칼 들고 협박하냐’ 그런 뜻이랍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검찰청 폐지 앞두고 5년 차 검사 사의’, 서울신문에 ‘검사 엑소더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국민들이 과거에 검찰들이 한 행적, 최근까지도 했던 조작기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해서 검찰더러 지금 개혁하고 양심에 따라서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공소청으로 거듭나라고 이야기했지, 무슨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갑자기 뭘 엑소더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길게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박상용 같은 여전히 검찰에 남아 있는 고위직 부패·비리 조작기소 검사들이 후배들에 대해서 선동질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너네가 지금 여기에 대들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그래 봐야 50여 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직서 내면 다 나가라 그러고요 일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하면 됩니다. 검사 하고 싶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변호사들이나 이런 친구들 중에도 ‘아이고, 내가 검사하면 정말 나쁜 놈들 제대로 혼내 줄 텐데. 똑바로 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 하는 사람…… 여기 위원님들 주변에도 많을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준동질을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청년들 일자리도 없는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일하기 싫은 애들 다 떠나라 그러세요. 일하고 싶은 애들 들어와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많고. 또 똑똑하고 일 잘해야 된다, 일 잘하는 공무원 많으면 좋지요. 대한민국이 이 판이 된 거는…… 잘하는 걸 떠나서 사실 공직자의 기본은 뭐겠습니까? 바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하는 거? 바르게 하는 검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고 바르게 하는 검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한직으로 다 밀려나고 허투루 하는 놈들이 대가리가 돼 가지고 휘저으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이 오늘 이 꼴이 됐는데요. 바르게 일할 사람들은 많이 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올바르게 재판할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많다. 싫은 놈들 다 떠나라고 그러고, 해태할 사람들 해태하라 그러고 관두라 그러면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일하겠소’ 하고 달려 들어올 거다.

지금 2차 특검도 보면 검사 출신, 검찰청에서 파견 나간 게 아니라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제대로 특검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제대로 앞으로 공소청을 지켜 나갈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는 것을 장관님 염두에 두시고요. 일체, 장관님 흔들거나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지금처럼 굳건하게 밀고 나가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완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검사들의 사직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약간 언론의 과도한 지적 같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이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판사로의 어떤 경력직으로 전관한 분이 굉장히 늘었고요. 최근 2022, 23, 24년 동안 검사 모집 자체가 너무 줄었었습니다. 굉장히 준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는 3대 특검에 한 150명까지 나가 있다가 현재도 지금 특검에 한 58명 정도 나가 있고 합수본에 한 23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각 개인 검사에게 배당되는 사건이 늘다 보니까 좀 일부 지연되는 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검사들은 최근에 거의 중앙지검부터 해 갖고 미제 사건 줄이고 남은 사건들 정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혁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작기소 이런 거 하라는 선배들 싫어 가지고 조용히 숨어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던 검사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숨어 있을 거다. 그분들을 잘 찾아내서 가지고 세우고 또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게 하면 대한민국 검사들이, 공소청이 빛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밀고 나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더 이상……

곽규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장관님,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언론에 나온 박상용 검사하고 서민석 변호인의 통화가 2023년 6월 19일 자 통화인데 그 직전에 이화영 씨가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결정적인 진실에 기초한 자백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검찰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증거를 이화영 스스로 자백을 하면서 ‘이 증거를 확인해 보면 나의 진술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 가지고 확보한 게 국정원 문건이에요. 이화영 진술을 토대로 해 가지고 검사가 모르고 있었는데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받아 가지고 이 국정원 문건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위 증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언이.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검사에게 요구했던 부분은 다 잘려 있어요. 그 내용 들어 보면 서민석 변호사가 ‘자백했으니까 형을 낮게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 달라, 보석 신청했을 때 좀 잘 봐 달라’ 이런 내용의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지금 이런 정도의 자백 가지고 그런 걸 원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변호인의 잘못된 형량 거래를 거부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박상용 검사는.

우리 용감하신 서 모 위원장께서는 ‘이재명은 대통령 됐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 씨’라고 하고 있더만요. 그것 정상적으로 다 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에서 동일하게 유죄 확정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간의 관심이 크고 한 정당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건에 있어 가지고 1·2·3심 유죄 나는 경우 요새 잘 없어요. 정말 수사 잘한 사건이라고 상을 줘야 될 사건입니다.

오히려 사건 조작은 정성호 장관님 그리고 김현지 실장이 한 거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님 2022년 12월 달에 이화영 특별면회 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무슨 말 나뉘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당시에 이 건에 관해서는 전혀 대화…… 그 당시에 어쨌든 검찰에서 이미 다 조사했을 겁니다, 제가 이화영·김용·정진상 면회한 것 때문에. 그 당시는 이화영 배우자의 요청에 의해 갖고, 당시 다른 변호인이 있었는데 그 변호인 선임 문제만 저와 의논하고 나왔습니다.

○곽규택 위원 국정조사특위에서 기관증인 돼 있는데 당시 특별면회 갔을 때 무슨 이야기 했는지 또 제가 물어볼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건 그대로 갖다 보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김현지 실장이—당시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인하고 비슷한 시기였는데—설주완한테 텔레그램을 보내 가지고 검찰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화영이 어떤 진술을 했느냐, 조사 도중에 무슨 특이 사항이 있었느냐 이런 걸 계속 확인해요. 김현지가 뭔데? 조작하고 있는 거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은 위원님의 주장 아니십니까?

○곽규택 위원 당시에 친명 좌장이었던 장관님이란 말이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나오셔 가지고 맞장구나 치고. 대한민국의 장관입니까, 민주당의 장관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위원님,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면회 가 가지고 단 한마디도 그렇게 물어본 사실이 없어요.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능한 지금까지 최대한 객관적,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수사한 검사가 정말 수사검사의 직을 걸고 수사를 했으면 잘했다고 하셔야지 지금 나오셔 가지고 특정 정당의 편을 들어 가지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지금 편을 든 게 뭐 있습니까?

○**곽규택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편을 들었으면요, 편을 들고 어떤 기획이라든가 의도를 갖고 제가 장관 임무 수행했다고 그렇게 저희 지지자한테 욕을 먹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제가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화영 면회 간 거 관련해서요 위원님 책임지십시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전체 녹음한 거 다 확인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서민석 변호사가 제외한 부분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거는 제가 확인할 방법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법무부에서 변호사 징계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니까 그러면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왜 권한이 없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내용을.

○**곽규택 위원** 변호사 징계를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니까 그 징계 사유가 되어야지. 어떻게 기록 나오면 바로 징계할 수 있습니까, 절차가 있는데?

○**곽규택 위원** 국정조사에서 또 봅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장관님,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특검과 국정조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러면 박근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근혜 위원** 훌륭한 법무부장관님을 앞에 두고 마치 어떤 사건의 조작에 앞선 분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어느 특정 의원실의 보좌관이었던 인물이 이 사태를 주도했던 인물이 되는 것처럼 저렇게 과장해서 질문하는 동료 위원님이 있다는 것은 참 너무도 지나치고 수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자백한 이후에 국정원 자료를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로 확보해서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화영 진술에 어떤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검사의

회유에 의한 진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정원 그 자료가 됩니까? 거기에 보면 쌍방울이 그야말로 자기 계열사 주가조작을 위해서 방북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들 중에 마닐라에는 돈을 받았다는 인물, 북한의 그 공무원이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 다 분명히 국정원 자료에 나타나는데 그 국정원 자료 자체가, 검찰의 기소가 조작기소인 것이 다 드러나는데 마치 무슨 국정원 자료에 특별한 내용이 있고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일치해서 검사의 수사를 보장이나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저건 동료 위원으로서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섰습니다.

나선 김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대검에서 그렇게 박상용 검사 감찰을 하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실적을 못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검 간부진들에게 수사의 성의가 없거나 두 번째는 법원이 수사에 협조 않는 이런 방식, 예를 들면 압수수색영장을 그렇게 반복해서 기각을 한다든가, 저는 둘 중의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늦어진 원인이 나중에 대검 간부들에게 책임이 있는 걸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장관님께서 충분한 상응하는 인사상의 문책을 하심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만약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많이 해서 수사 협조를, 수사 진행을 방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란 때 도와준 거나 인간 사냥극을 벌였던 검사를 감싸는 데 동원됐거나, 법원의 처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영장제도, 발부제도의 변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도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인사상의 문책 아니면 영장제도의 변화, 둘 중의 하나를 법무부에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다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려고 하는데 혹시 장관님, 다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조금 기회를 드릴까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한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과거에 이화영 부지사를 딱 한 번 특별접견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화영 배우자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특별면회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나중에 그 당시 접견 기록이 특검에 제출되면,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에 제출되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내용은 딱 짧은 거였습니다. 그 당시 변호인이 있었는데 그 변호인이 사임을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사임하지 말게 설득 좀 해 달라, 딱 그 내용만 얘기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려고 구속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 내용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가 정진상, 김용 접견해서 특히 정진상 접견하면서 위증교사를 했다 또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접견 기록도 대부분 조작된 내용이었습니

다, 제가 추후에 확인했는데. 그 당시 그 내용은 나중에 국정조사 때 밝혀지면 혹시 제가 다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이 어땠는지,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게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쪽저쪽에 치우치거나 제가 기획에 따라간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그 서슬 퍼런 윤석열 검찰독재 시절에도 장관님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지 못했던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잘 답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4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준 위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영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이의 있으십니까?

○서영교 위원 송석준 의원안이라 이의 있습니다. 그러나 참지요, 내가.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부터 제129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0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7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김재섭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최혁진

○청가 위원(1인)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산림청

청장 박은식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해양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권한대행 기우중